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43
----------	------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 11. 8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7. 11. 1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 11. 8.)
 - 부위원장 선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7. 12.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7. 12. 5.)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7. 12. 15)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1. 2018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여건

- 2018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와 민간소비 증가세로 완만한 성장세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부담 등 위험요인이 상존 하고 있어 금년에 이어 3.0%로 전망하고 있으며,
 - 우리시의 지방세 세입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조 5,41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과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 의무경비가 1조 5,000억원이 증가하여 우리시 지방세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임
-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복지·일자리 등 시민생활 안정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경기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을 적극 계상하였음

2. 2018년도 예산규모

- 2018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31조 7,429억원으로, 일반회계 22조 6,731억원, 특별회계 9조 698억원임
- 일반·특별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3조 2,880억원과 특별회계간 전출입분 4,586억원을 제외한 27조 9,963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보다 6.4% 증가하였음
- 또한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 4조 4,607억원과 교육청 지원 2조 9,868억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9,623억원을 제외한 실 집행 예산 규모는 19조 5,865억원임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조 6,731억원임.
- 경제성장에 따른 지방소득세·취득세 증가 등으로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보다 1조 5,411억원(9.9%) 증가한 17조 965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991억원(△6.7%) 감소한 1조 3,728억원이며,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3조 8,072억원을 반영하였고,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7	증 감	%
총 규 모	226,731	206,398	20,333	9.9
자 체 수 입	184,693	170,273	14,420	8.5
시 세	170,965	155,554	15,411	9.9
취 득 세	43,946	40,071	3,876	9.7
레 저 세	1,321	1,268	53	4.2
담 배 소 비 세	6,244	6,343	△99	△1.6
지 방 소 비 세	12,127	10,559	1,568	14.8
주 민 세	5,052	4,788	264	5.5
지 방 소 득 세	48,483	42,298	6,185	14.6
재 산 세	23,694	21,664	2,030	9.4
자 동 차 세	11,016	10,545	471	4.5
지 역 자 원 시 설 세	2,760	2,590	170	6.6
지 방 교 육 세	13,956	13,096	860	6.6
지 난 년 도 시 세	2,366	2,333	33	1.4
세 외 수 입	13,728	14,719	△991	△6.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344	7,680	△2,336	△30.4
임 시 적 세 외 수 입	8,384	7,039	1,345	19.1
지 방 교 부 세	1,434	1,334	100	7.5
국 고 보 조 금	36,638	30,912	5,726	18.5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3,966	3,879	86	2.2
보 전 수 입 등	288	318	△30	△9.5
내 부 거 래	3,678	3,561	116	3.3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조 698억원임.
- 자체수입은 3조 2,242억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2조 1,086억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1,156억원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조 2,880억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1조 2,927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전입금 8,115억원, 유가보조금 3,421억원이며, 특별회계간 전입금은 4,586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1조 1,453억원이며,
- 공채 및 차입금은 8,537억원으로 2018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7,780억원과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722억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35억원을 반영하였음

○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특별회계명	2018 예산안	2017 예산	증 감	
			금 액	%
계(10개)	90,698	91,613	△915	△1.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270	14,100	△2,830	△20.1
교통사업	13,334	11,458	1,876	16.4
주택사업	15,657	18,262	△2,605	△14.3
도시개발	11,794	13,146	△1,352	△10.3
의료급여기금	10,963	9,789	1,174	12.0
한강수질개선	284	285	△1	△0.4
광역교통시설	2,599	1,245	1,354	108.8
소방안전	8,221	7,518	703	9.4
상수도사업	8,200	7,900	300	3.8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변경('18.1.1)	8,376	7,910	466	5.9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전환('18.1.1)

4.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8년도 순계규모 27조 9,963 억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35.1%인 9조 8,239억원으로 금년대 비 1조 5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 해 나갈 계획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과 양육 지원에 2조 1,051억원 기초연금 확대 등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에 1조 9,109억원,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 재활 및 자활, 치료지원에 2조 7,262억원을 배정하였음
-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에 1조 1,311억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청소년시설 건립·운영, 50+세대 지원 등에 1,544억원, 정신건강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1,887억원, 안전한 먹거리 공급지원에 1,955억원을 반영하였음
- 산업경제 부문은 5,681억원(2.0%)을 배분하여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동반 성장 시대를 열겠음

- R&D, 문화콘텐츠 등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에 714억원, 흥릉 바이오 클러스터,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혁신거점 구축에 432억원, 노동복합시설 개관 등 상생과 공정경제 실현에 813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533억원, 어르신,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일 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문화·교통 등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면 서울시 전 분야에 걸친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총33만개의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교통·도시안전 부문은 3조 6,431억원(13.0%)을 배분하여 사람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과 도로·지하철·상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인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음
-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6,926억원, ‘걷는 도시 서울’ 조성 확대 및 교통안전 강화에 1,185 억원, 9호선 3단계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8,456 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강화에 6,370 억원 상습침수 취약지역 해소 등 재난대응 안전망 구축에 3,542 억원, 황금시간 출동 위한 소방력 강화에 1,535억원을 반영하였음

- 공원·환경 부문은 1조 7,582억원(6.3%)을 배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지공간을 확충·보존하며, 한강의 자연성 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음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에 1,446억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60억원, 친환경 차량보급 확대에 603억원, 대기질 개선 기반 마련에 189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식물원 개장 등 녹색재생공간 확충·보존에 1,431억원,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질개선에 897억원을 반영하였음
- 재생·주택 부문은 4,948억원(1.8%)을 배분하여 쇠락한 산업지역,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주는 新경제 재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체감 가능한 근린형 재생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음
 -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27억원,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에 334억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208억원을 편성하였음
 - 또한 서울역, 장안평, 영등포 등 新경제 재생 및 기반조성에 350억원, 활력있는 대학가 조성에 120억원, 노후 주거지 재생에 196억원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 부문은 6,400억원(2.3%)을 배분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기반

을 조성하고, 전문·생활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음

- 공예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등 문화시설건립 본격 추진에 404억원, 청년예술인 지원 등 생활예술 활성화에 1,472억원, 풍납 토성 핵심지역 조기보상 등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1,917억원을 편성하였음
- 관광마케팅 전개 등 서울관광 성장기반 강화에 631억원,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등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에 1,125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에 229억원을 반영하였음
- 일반행정 부문에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서울기록원 건립, 120다산콜재단 운영, 클라우드센터 및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등에 8,238억원(2.9%)을 반영하였음
- 그 밖에 자치구 지원은 4조 4,607억원(15.9%)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2조 8,829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1조 5,7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교육청 지원은 지방세(보통세의 10%), 지방교육세(100%), 담배소비세(45%)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2조 9,868억원임

○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7,761억원으로 순계 예산의 6.3%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 예산의 3.0%인 8,139억원임

○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107억원 증가한 2,069억원임.

○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도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억원)

분 야	2018	%	2017	%	증 감	%
순 계	279,963	100.0	263,017	100.0	16,946	6.4
사 업 비	179,588	64.1	163,698	62.2	15,890	9.7
사 회 복 지	98,239	35.1	87,735	33.4	10,504	12.0
도 시 · 교 통	23,196	8.3	17,747	6.7	5,449	30.7
공 원 · 환 경	17,582	6.3	17,212	6.5	370	2.1
도 시 안 전	13,235	4.7	14,589	5.5	△1,355	△9.3
문 화 관 광	6,400	2.3	6,291	2.4	109	1.7
산 업 경 제	5,681	2.0	5,444	2.1	237	4.4
도시계획및주택정비	4,948	1.8	5,403	2.1	△455	△8.4
일 반 행 정	8,238	2.9	7,315	2.8	923	12.6
예 비 비	2,069	0.7	1,962	0.7	107	5.5
교 육 청 지 원	29,868	10.7	28,149	10.7	1,719	6.1
자 치 구 지 원	44,607	15.9	41,124	15.6	3,483	8.5
행 정 운 영 경 비	17,761	6.3	16,769	6.4	991	5.9
재 무 활 동	8,139	3.0	13,277	5.0	△5,138	△38.7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① 2018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재정지출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17.11. 9)를 통하여
 -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에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규모(순계)의 35.1%인 9조 8,239억원을 편성하여 9조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복지분야에 투자
 -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681억원을 투자
 -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교통·안전 분야에 금년도보다 12.7%, 4,095억원 증가한 3조 6,431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도 재정편성 방향을 발표함

2. 재정운용규모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안은 31조 7,42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5%, 1조 9,417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기금은 2조 1,84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3%, △301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임

〈표 1〉 2018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 산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기 금 (1 6 개)	21,840	22,142	△301	△1.4

3. 예산안 개요

(1) 2018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조 7,428억원을 편성한바 이는 2017년도 본예산대비 6.5% (1조 9,417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2조 6,731억원, 특별회계 (10개)는 9조 697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 2018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계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270	14,099	△2,829	△20.7
교 통 사 업	13,333	11,457	1,875	16.3
주 택 사 업	15,657	18,261	△2,604	△14.2
도 시 개 발	11,794	13,145	△1,351	△10.2
의 료 급 여 기 금	10,962	9,788	1,173	11.9
한 강 수 질 개 선	283	285	△2	△0.8
광 역 교 통 시 설	2,599	1,244	1,354	108.8
소 방 안 전	8,220	7,518	702	9.3
수 도 사 업	8,200	7,900	300	3.8
공기업하수도사업	8,375	-	8,375	(순증)
하 수 도 사 업	-	7,910	△7,910	(폐지)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조 6,731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20조 6,398억원)보다 9.9%, 2조 333억원 증액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17조 964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1조 3,728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조 4,719억원)보다 △6.7%, △990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434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1,334억원)보다 7.5%,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7년도 본예산(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 증액된 3조 6,63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2018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226,731	206,398	20,333	9.9
지방세 수입	170,964	155,553	15,410	9.9
세외수입	13,728	14,719	△990	△6.7
지방교부세	1,434	1,334	100	7.5
국고보조금 등	36,638	30,911	5,726	1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65	3,879	86	2.2

2) 특별회계

- '18년도에는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임
- '18년도에 운용될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9조 697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0%, △915억원 감액편성한 것임
- **자체수입**은 3조 2,243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8%, 578억원 증액된 것이며 **전입금**은 3조 8,465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보다 6.8%, 2,481억원 증가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1조 1,452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2.5%, △296억원 감액한 것이며 **공채 등 차입금**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30.1%, △3,678억원 감액한 8,537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4〉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90,697	91,613	△915	△1.0
자 체 수 입	32,243	31,664	578	1.8
전 입 금	38,465	35,984	2,481	6.8
공채 등 차입금	8,537	12,216	△3,678	△30.1
국고보조금 등	11,452	11,748	△296	△2.5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31조 7,428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9.9%(2조 333억원) 증액된 22조 6,73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Δ 1.0% (Δ 915억원) 감액 편성된 9조 697억원임

- 회계간 전출입은 3조 7,465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조 2,880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585억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8조 2,620억원으로
 - 자치구 지원은 일반회계중 4조 4,217억원과 특별회계중 390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
 - 일반회계 채무상환 1,886억원과 특별회계 채무상환 2,964억원
 - 기금전출금 등 3,080억원 및 특별회계 반환금 216억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9조 7,343억원으로 일반회계 11조 5,383억원, 특별회계 8조 1,960억원임

〈표 5〉 2017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규 모	317,428	298,011	19,417	6.5
일 반 회 계	226,731	206,398	20,333	9.9
특 별 회 계	90,697	91,613	△915	△1.0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회계간 전출입 : 3조 7,465억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3조 2,880억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585억원

순 계 규 모	279,963	263,017	16,946	6.4
일 반 회 계	193,851	176,556	17,295	9.8
특 별 회 계	86,112	86,461	△349	△0.4

법정의무경비 : 8조 2,620억원

법 정의 무 경 비
차 감

일반회계 7조 9,050억원

특별회계 3,570억원

- 자치구 지원 4조 4,217억원

- 자치구 지원 300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

- 채무상환 2,964억원

- 채무상환 1,886억원

- 반환금 216억원

- 기금전출금 등 300억원

실 집 행 규 모	197,343	180,467	16,881	9.3
일 반 회 계	115,383	105,469	9,918	9.7
특 별 회 계	81,960	74,997	6,963	9.2

2) 부문별 자원 배분

- 총계기준 2018년도 예산안 31조 7,428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 3조 7,465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조 9,963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법정의무경비(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7조 9,583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9.7%, 1조 5,890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자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9조 8,239억원(35.1%)이며 도로교통 2조 3,196억원(8.3%), 공원·환경 1조 7,581억원(6.3%), 도시안전 1조 3,234억원(4.7%), 문화관광 6,399억원(2.3%), 산업경제 5,681억원(2.0%) 등임
- 법정의무경비(8조 2,620억원)의 경우, 자치구 지원 4조 4,607억원(15.9%), 교육청 지원 2조 9,867억원(10.7%)을 편성하고, 채무상환 4,850억원(1.7%), 반환금 216억원(0.7%), 기금전출금 등 3,080억원(1.4%)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6〉 2018년도 예산안 자원배분 현황 (부문별, 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순 계	279,963	100.0	263,017	100.0	16,946	6.4
사 업 비	179,583	64.1	163,693	62.2	15,890	9.7
사 회 복 지	98,239	35.1	87,735	33.3	10,504	12.0
도 로 교 통	23,196	8.3	17,746	6.7	5,450	30.7
공 원 · 환 경	17,581	6.3	17,211	6.5	370	2.1
도 시 안 전	13,234	4.7	14,589	5.5	△1,355	△9.3
문 화 관 광	6,399	2.3	6,290	2.4	109	1.7
산 업 경 제	5,681	2.0	5,444	2.1	237	4.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4,947	1.8	5,402	2.1	△455	△8.4
일 반 행 정	8,237	2.9	7,315	2.8	922	12.6
예 비 비	2,069	0.7	1,961	0.7	108	5.5
교 육 청 지 원	29,867	10.7	28,148	10.7	1,719	6.1
자 치 구 지 원	44,607	15.9	41,124	15.6	3,483	8.5
행 정운 영경 비	17,760	6.3	16,769	6.4	991	5.9
재 무 활 동	8,146	3.0	13,313	5.1	△5,167	△38.8

〈표 7〉 2018년도 예산안 자원배분 현황 (성질별,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317,428	100.0	298,011	100.0	19,417	6.5
인 건 비	14,313	4.5	13,568	4.5	74,506	5.4
물 건 비	12,295	3.8	12,190	4.0	105	0.8
경 상 이 전	156,018	49.1	139,983	46.9	16,034	11.4
자 본 지 출	48,905	15.4	50,573	16.9	△1,667	△3.3
융자 및 출자	8,445	2.6	4,079	1.3	4,365	107.0
보 전 재 원	1,472	0.4	5,630	1.8	△4,158	△73.8
내 부 거 래	73,294	23.0	69,360	23.2	3,933	5.6
예비비 및 기타	2,683	0.8	2,623	0.8	59	2.2

②.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8년도 예산안의 특징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29조 8,011억원)보다 6.5%, 1조 9,417억원 증액된 31조 7,42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금년도(20조 6,398억원)보다 9.9%, 2조 333억원이 증액된 22조 6,731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금년도(9조 1,613억원)보다 △1.0%, 915억원이 감액된 9조 697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 바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5.4%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17조 964억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221)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6.3%, 1조 4,151억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20조 9,841억원)보다 9.6% 초과수납된 23조 192억원이 수납된 사례가 있음¹⁾

1)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 p.20

- 다만 과거 세입결산 결과를 고려하여 '18년도 세입결산전망도 긍정적으로 예측된다고 하여도 세입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서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간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변화로 내년도 세입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6.5% 증가한 31조 7,428억원을 편성한 바
- 조정교부금(2조 8,829억원)을 포함한 자치구 지원(4조 4,607억원), 교육청 지원(2조 9,867억원) 등 법정사항 등의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기초연금(1조 6,728억원), 영유아보육(6,171억원), 가정양육수당(2,700억원), 아동수당(2,202억원)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적 편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음
- 특히,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어 세입·세출균형을 고려할 때 세출재원도 연계운용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18년도에 편성요청한 31조 7,428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2)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지방채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수정할 수 있음

- **일시차입한도**의 경우, 금년도보다 500억원 상향된 6,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³⁾

2)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2017년 11월 현재 일시차입한도액은 5,500억원이나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도 5,500억원, 2015년도 5,500억원, 2014년도 5,50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만 설정하고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 : 재무과-55033 ('17.11.10)

- '18년도의 경우, 일시차입한도가 상향된 것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4)의 미 이행 상태를 해소한 바
 -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18년 1월 1일부터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동 공기업특별회계의 일시차입한도를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이 상향된 것임
 - '18년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우회,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활용됨

4)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이하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상환액의 경우,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요인일 수밖에 없으나 '18년도에는 채무부담 행위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서 ①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7,780억원, ②도시개발특별회계 757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1조 2,368억원으로 통보한 바⁵⁾

- 2018년도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별도 승인⁶⁾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매출공채인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②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한도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 '18년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1조 2,368억원)에서 ②도시개발특별회계(757억원)를 차감하여도 지방채발행 한도까지 1조 1,611억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016 (2017. 7.14), “2018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 통보”

6)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표 10〉 지방채 발행한도 및 실제 발행현황

(단위 : 억원)

	2018년도	2017년도 ^{주1)}	2016년도	2015년도
발행한도액	12,368	11,270	9,411	8,057
실제발행액	(미정)	5,785	5,947	8,182
도시철도공채 ^{주2)}	-	4,781	3,921	7,178 ^{주3)}
국민주택기금	-	1,004	1,326	1,004
지하철9호선 및 신림선 건설	-	-	700	-

※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3402 (2017.11.10)

주1) 2017년 10월 현재

주2) 도시철도공채는 한도액에서 제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주3) 개별소비세 한시인하에 따른 차량등록증가로 공채 초과매출 발생

- 다만, 회계연도중 재정운용상 금융기관채 등 신규 차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채 원금 규모가 증가될 경우에는 상환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발행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7)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7)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①항8)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⁹⁾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22조 6,731억원)의 0.72%, 1,621억원을 편성하고, 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82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17년도 본예산(1,755억원)대비 4.3%, 66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서울시의 재정지출요인을 고려할 때 과소편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¹⁰⁾에 따라 보고된 2017년도 3/4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¹¹⁾을 고려할 때 '18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범위에서 편성

10)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1/4분기 11억 7,000만원 (예산담당관-5238), 2/4분기 7억 6,600만원 (예산담당관-8732), 3/4분기 예비비 지출 없음 (예산담당관-12356)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¹²⁾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는 제도임
- 2018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2조 6,731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20조 6,398억원)과 비교할 경우, 9.9%, 2조 33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1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표 11〉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22,673,130	20,639,809	2,033,321	9.9
지	방 세 수 입	17,096,474	15,555,376	1,541,098	9.9
	보 통 세	15,188,359	13,753,517	1,434,842	10.4
	취 득 세	4,394,623	4,007,054	387,569	9.7
	주 민 세	505,197	478,803	26,394	5.5
	재 산 세	2,369,431	2,166,398	203,033	9.4
	자 동 차 세	1,101,638	1,054,541	47,097	4.5
	레 저 세	132,083	126,768	5,315	4.2
	담 배 소 비 세	624,383	634,255	△9,872	△1.6
	지 방 소 비 세	1,212,695	1,055,931	156,764	14.8
	지 방 소 득 세	4,848,309	4,229,767	618,542	14.6
	목 적 세	1,671,518	1,568,562	102,956	6.6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58,985	16,980	6.6
	지 방 교 육 세	1,395,553	1,309,577	85,976	6.6
	지 난 년 도 수 입	236,597	233,297	3,300	1.4
세	외 수 입	1,372,835	1,471,907	△99,072	△6.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34,404	767,987	△233,583	△30.4
	재 산 임 대 수 입	150,571	114,192	36,379	31.9
	사 용 료 수 입	145,752	138,446	7,306	5.3
	수 수 료 수 입	3,091	2,759	332	12.0
	사 업 수 입	179,516	475,274	△295,758	△62.2
	징수교부금수입	10,386	11,355	△969	△8.5
	이 자 수 입	45,086	25,959	19,127	73.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838,431	703,919	134,512	19.1
	재 산 매 각 수 입	576,494	511,875	64,619	12.6
	부 담 금	32,566	26,334	6,232	23.7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113	9,230	△2,117	△22.9
	기 타 수 입	203,520	142,148	61,372	43.2
	지 난 연 도 수 입	18,735	14,330	4,405	30.7
지	방 교 부 세	143,441	133,418	10,023	7.5
	보 통 교 부 세	110,441	104,169	6,272	6.0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3,000	29,249	3,751	12.8
보	조 금	3,663,808	3,091,175	572,633	18.5
지	방 채 ^{주1)}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6,570	387,932	8,638	2.2
	보 전 수 입 등	28,787	31,797	△3,010	△9.5
	내 부 거 래	367,783	356,135	11,648	3.3

※ 주1)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¹³⁾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액(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된 17조 96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1조 4,719억원)보다 △6.7%, △990억원 감액된 1조 3,728억원,¹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1,334억원)보다 7.5%, 100억원 증액된 1,434억원,¹⁵⁾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 증액된 3조 6,638억원¹⁶⁾을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65억원¹⁷⁾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15조 5,553억원)보다 9.9%, 1조 5,410억원 증액된 17조 96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추가 규제가능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거래둔화 요인이 있으나, 경제성장 및 명목임금 상승,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4조 2,297억원)보다 14.6%, 6,185억원 증액된 4조 8,48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① 개인소득분(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② 법인소득분, ③ 특별징수분¹⁸⁾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경제성

13) '17년도의 경우, 지방세수입을 추경으로 증·감 조정한 바 없음

14)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1조 1,620억원)보다 18.1%, 2,107억원 증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5)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1,500억원)보다 △4.4%, △66억원 감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6)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3조 2,045억원)보다 14.3%, 4,592억원 증액편성 하여 제출한 것임

1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77억원(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 포함

18) 특별징수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장, 명목임금 상승,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세수가 증가될 개연성이 높은 세목임

- 다만, 지난 8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이른바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에 따라 지난 10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중과20)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의결여부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분 세수에 대한 증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동 세목중 양도소득분을 금년도(4,062억원)보다 $\Delta 7.8\%$, $\Delta 315$ 억원 감액된 3,747억원으로 편성한 바, 세수결손 등을 방지하고자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금년도 본예산(4조 70억원)보다 9.7%, 3,875억원 증액된 4조 3,946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 19) ■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①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전 지역, 과천시, 세종시) 및 투기지역(서울시 11개 자치구, 세종시) 지정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11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추가연장 없이 '18년 1월부터 시행
 - ②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③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본 40% 적용
 - ④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등
- 20) 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분 중과
②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분 기본세율에 1%(3주택 이상 보유자는 2%)를 가산하여 양도소득분 중과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지역(25개 자치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 취득세는 '18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세수입의 25.7%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변동,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등에 따라 세수의 증감폭이 매년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동 세목은 지난 '11년도 이후 연속된 정부주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12년도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수년간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된 바 있음
- 그러나 '18년도의 경우,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2대책”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²¹⁾ 등이 시행되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부동산시장 거래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후 부동산 취득세 신고가 감소된 비율을 반영하여 동 세목의 세입예산액(4조 3,946억원)을 금년도 징수전망액(4조 9,793억원)보다 △11.7%, △5,847억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21) ■ '17년 8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7호) 개정에 따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①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적용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40% 적용(단, 서민·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50%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30%)

②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40% 적용(단, 서민·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50%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30% / 1억원 이내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DTI 적용배제)

- **재산세**는 '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13.9%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2조 1,663억원)보다 9.4%, 2,030억원 증액된 2조 3,69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 '07년도까지 전액 구세로 징수되었으나, '08년도부터는 구세로 징수되던 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구성되는 보유세 성격의 세목임
 - 동 세목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세표준이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방세목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원이나,
 - 지난 '13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해 공시지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1조 8,431억원)중 △0.9%, △179억원을 감추경한 사례도 있어 점증적 세수추계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세목으로 판단됨
 - 다만,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후속 규제정책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발생가능한 세입규모의 유동성에 대해 선제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7.1%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1조 559억원)보다 14.8%, 1,567억원 증액된 1조 2,126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²²⁾의 11%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인 바,²³⁾ 가계부채규모 확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감수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는 2018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도(2.3%)보다 0.3%포인트 증가된 2.6%로 전망하고 있고,²⁴⁾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소비세 세수도 증가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0월, 중앙정부가 공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등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2) 부가가치세 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공제세액 + 가산세

23) 지난 '13년도까지는 **소비지출분(과세표준의 5%)**이 시·도별로 안분되었으나, '13년 9월, 중앙정부가 확정·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13. 8)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보전분(과세표준의 6%)**이 추가 교부되어 부가가치세 세액의 총 11%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임

24)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17.10, p.20~21

- 다만, 구체적인 세수 증가규모는 향후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수립내용, 관계법령 개정내용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서울시의 세출구조 특수성 등을 설명하여 자주재원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세**는 2018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의 6.4%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1조 545억원)보다 4.5%, 470억원 증액된 1조 1,01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목으로 **소유분 자동차세**(5,962억원)의 경우,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바, 등록차량 증가, 요일제 감면제도 폐지 등 세입 증가요인이 있어 금년도(5,626억원)보다 6.0%, 335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납세의식 결여 등을 사유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난 '16회계연도에는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결정액(6,489억원)중 11.4%, 736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15회계연도에도 징수결정액(6,351억원)중 12.5%, 796억원이 미수납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행분 자동차세**(5,054억원)는 금년도(4,918억원)보다 2.8%, 135억원 증액편성된 바, 주행분 자동차세를 구성하는 자동차세 보

전분과 유가보전분의 안분비율이 매년 조정되고 있어 세수추계가 용이하지 않고, 유가가 급격히 상승될 경우, 소비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세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여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금년도(1조 4,719억원)보다 $\Delta 6.7\%$, $\Delta 990$ 억원 감액된 1조 3,728억원을 편성한 것임

○ '17년도와 비교하여 세외수입 편성규모가 감소된 것은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7,039억원)보다 19.1% , 1,345억원 증액된 8,38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이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금년도(5,118억)보다 646억원 증액편성하고, 시도비 반환금 50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정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도(7,679억원)보다 $\Delta 30.4\%$, $\Delta 2,335$ 억원 감액된 5,344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난 수년간 매각을 추진한 DMC 사업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이를 분할하여 일부 용지만 매각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금년도(3,189억원)보다 $\Delta 2,998$ 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편성한 정상적 세외수입도 예산액(7,509억원)보다 $\Delta 31.8\%$, $\Delta 2,395$ 억원 감소된 5,114억원이 실수납된 사례가 있어 민간소비가 둔화될 경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구성된 정상적 세외수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되어 세수감소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5,149억원,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17년도에는 4,376억원, '16년도 5,348억원, '15년도 4,734억원, '14년도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해당 부지가 매각되지 못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중 DMC 사업용지 매각(191억원, 매각사업수입)의 경우에도 수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 해당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계획대로 매각될 경우, 대규모 세수가 확보되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의 경우, 매각 가능한 시기, 적정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1,334억원)보다 100억원 증액편성된 1,434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난 '14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제3조가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개정²⁵⁾된 이후 「지방교부세법」 제4조²⁶⁾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

25) 2014년 12월23일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으나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의 개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분권교부세**, ④부동산교부세, ⑤소방안전교부세에서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26)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보통교부세(舊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바 '18년도에는 보통교부세 1,104억원이 교부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 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16, '17년도에 교부된 총액규모로 교부될 것으로 추계하여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편성 요청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예산 규모(331억원)와 유사한 33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예산 확정후 내시액 등이 통보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 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임

-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금년도(3조 911억원)보다 18.5%, 5,726억원이 증액된 3조 6,638억원을 편성한 바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정부추경 등으로 정부가 국비 지원규모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경으로 시비를 대응편성하거나 세출재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된 바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가 시비 대응편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이 신설된 바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가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부거래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77억원(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75억 4,400만원, ②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 2억 3,800만원)임
-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조 697억원으로 2017년도(9조 1,613억원)보다 △1.0%, △915억원이 감소된 것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039억원이 증가하고, 사업수입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하남선(5호선연장)사업과 별내선(8호선연장)사업 관련 부담금 증액분 604억

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896억 등 2,404억원을 증액하여 요청하고 있으나,

- 공채 및 차입금 △3,679억원²⁷⁾, 사업외 수입 △1,825억원, 국고보조금 △296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하여 금년도보다 △915억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표 12〉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 0 1 8		2 0 1 7		증 감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0,697	100.0	91,613	100.0	△915	△1.0
자 체 수 입	32,243	35.6	31,665	34.6	578	1.8
사업수입	25,121	27.7	22,717	24.8	2,404	10.6
사업외수입	7,122	7.9	8,947	9.8	△1,825	△20.4
타회계전입금등	38,465	42.4	35,984	39.3	2,481	6.9
일반→특별	32,880	36.3	29,841	32.6	3,039	10.2
특별→특별	4,585	5.1	5,152	5.6	△567	△11.0
기금→특별	1,000	1.1	990	1.1	10	1.0
공채및차입금	8,537	9.4	12,216	13.3	△3,679	△30.1
국고보조금	11,452	12.6	11,748	12.7	△296	△2.5

27) '18년도 공채 및 차입금이 금년도보다 감편성된 것은 금년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 편성액이 1조 1,189억원으로 금융기관채 4,298억원, 매출공채 6,891억원을 발행할 고자 해당 세입과목을 편성한 것임

○ 타회계간 전입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2,481억원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3조 2,880억원을 전출하고, 특별회계 간 혹은 계정간 4,585억원, 감채기금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1,000억원을 전·출입할 것으로 검토됨

- 회계간 전·출입중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도시지역분)²⁸⁾, 자동차세(주행분), 소방안전교부세 수입을 관련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함

28)●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중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표 13〉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3,288,011	2,984,172	303,839	
일반회계	교 통 사 업	765,934	698,017	48,259	
		242,064	256,567	△14,503	▸ 버스재정지원등 당해연도 세출 소요분에 따른 교통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342,098	293,256	48,842	▸ 지방세 세입중 자동차세(주행분) 유가보조금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가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32,838	31,028	1,810	▸ 교통방송 인건비 증가 등 세출소요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지원 증가
	광역교통시설	19,658	-	19,658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주 택 사 업	258,552	234,332	24,220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129,276	117,166	12,110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도 시 개 발	904,931	820,164	84,767	▸ 지방세 세입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소 방 안 전	811,547	743,241	68,306	
		511,172	462,673	48,499	▸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족재원 지원
		24,750	21,937	2,813	▸ 2016년 결산 및 2017년 최종예산 등 감안 증액 추계
		275,625	258,631	16,994	▸ 지방세 세입중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증추계에 따른 증액
	의 료 급 여 기 금	547,047	488,418	58,629	▸ 의료급여대상자 증가 등 국비내시에 따른 매칭비 증가

〈표 14〉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58,585	515,247	△56,662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156,687	129,156	27,531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124,800	120,005	4,795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150,800	163,000	△12,200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	7,487	△7,487	▸9호선 3단계 건설 등 종료
	광역교통시설	-	72,400	△72,400	▸광역교통시설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	18,970	△18,97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수도사업	-	1,048	△1,048	〃
	수도사업	-	150	△150	〃
공기업하수도	수도사업	1,129	-	1,129	▸상수도연구원 경상적경비 지원
	수도사업	100	-	100	〃
	수도사업	22,100	-	22,100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0%)
한강수질	수도사업	2,969	3,031	△62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

- 다만, 특별회계²⁹⁾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반회계에 편성된 지방세 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29)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아울러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안정적으로 전입되지 않을 경우,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검토되거나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의 경우, 감채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할 것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기타회계전출금(1,000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금전입금(1,000억원)으로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³⁰⁾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재원확보가 고려될 필요성은 있으나 감채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바, 동 편성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0)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17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제 차입이 아닌 이른바 장부상 중복 기재되는 채무를 정리하고,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전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포장 될 수밖에 없어 회계간전출입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공채 및 차입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679억원 감소된 8,537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회계연도중 발행될 수 있는 공채 및 차입금에 대한 한도를 승인요청한 것임
 - 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매출공채 7,78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1조 1,189억원)보다 △3,409억원 감액 편성된 것임
 - 그 밖에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34억원)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금융기관채(72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96억원 감액된 1조 1,45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호선 3단계 건설 1,46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억원, 신림선 경전철(민자) 162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30억원, 지하철 승강편의 시설 설치 57억원 등을 포함한 2,437억원을 편성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상버스 도입 171억원, 지능형교통체계(C-TIS)사업 40억원, 전세 및 특수여객 첨단안전장치(졸음방지) 4억 5,000만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3억 6,000만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2억원 등을 포함한 245억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0억원(태릉~구리 50억원, 하남선(5호선연장)사업 40억원, 별내선(8호선연장)사업 2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매입관련 기금지원액 304억원,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건설 6억원, SH공사 미매각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71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민선 6기) 593억원, 공공원룸주택 매입 288억원, 기존주택매입관련 국고지원 715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130억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29억원 등을 포함한 2,148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6억원, 풍납도성복원 420억원,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35억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5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10억원,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9억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51억원 등 557억원 등을 포함한 편성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63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4억원,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4억 등을 포함한 28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15〉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2018	2017	증감	증감률
소계	1,145,205	1,174,848	△29,643	△2.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43,701	160,371	83,330	52.0
교통사업	24,570	16,973	7,596	44.8
광역교통시설	29,000	44,274	△15,274	△34.5
주택사업	214,800	366,549	△151,749	△41.4
도시개발	55,775	65,221	△9,446	△14.5
하수도사업	-	3,335	△3,335	-
공기업하수도사업	1,062	-	1,062	-
의료급여기금	547,046	488,418	58,628	12.0
한강수질개선	26,399	26,493	△94	0.4
소방안전	2,852	3,214	△362	△11.3

※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정부기금, 기타회계보조금 포함
공기업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 되어 있는 바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시행령」³¹⁾을 근거로 당해 연도('17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18년도) 세입에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경우,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중 7개 특별회계가 2017회계연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 전망분을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³²⁾
 - 그러나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7조는 '18년도 1월 1일 이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라고 「지방회계법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음³³⁾

31) 「지방회계법시행령」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3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50%씩 매칭되고 있어 검토에서 제외

- '17년도의 경우,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17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이입하여 편성하였으나
- '17년 6월, '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되어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88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020억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 금년도에 대한 출납폐쇄이후 '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18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관행적으로 해석한 사례일 수 있으나 법규에 대한 관행적이며 편의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요청된 순세계잉여금 4,206억 9,700만원은 관련법 준수를 통한 회계질서확립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6〉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주1)}		'17년도 결산상잉여금 (예상액)	'18년도 편성액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잔액 ('18년도 추경재원)
합 계		420,697	420,697	0
교 통 사 업		93,549	93,549	0
광 역 교 통 시 설		142,852	142,852	0
주 택 사 업		116,468	116,468	0
도 시 개 발		63,075	63,075	0
한 강 수 질 개 선		1,858	1,858	0
소 방 안 전		2,895	2,895	0

※ 주1)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외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나 회계간 전입·전출 등으로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전·출입되는 회계에 중복계상 되어 재원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³⁴⁾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³⁵⁾
- 아울러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³⁶⁾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법 제8조2

34)•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이하 생략)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35)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항37)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도에 편성 요청된 성인지예산은 총 272개 사업, 2조 2,622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사업으로 2조 2,506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116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7〉 성인지예산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사업수	2018	2017	증감	증감률
총 계	272	2,262,214	1,846,842	415,373	22.5
예 산	263	2,250,612	1,820,236	430,376	23.6
일반회계	239	2,143,662	1,750,927	392,735	22.4
특별회계	24	106,950	69,309	37,641	54.3
기 금	9	11,602	26,606	△15,004	56.4

- 성인지 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검토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1,620억 5,900만원(85개 사업)을 편성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였으나 '18년도에는 86개 사업, 3,0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8〉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18(제출안)		2017(본예산)		증 감	증감률
		예산액	%	예산액	%		
계	272개 사업	2,262,214	100.0	1,846,842	100.0	415,373	22.5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³⁸⁾	1,601,725	70.8	1,177,080	63.7	424,645	36.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³⁹⁾	354,062	15.7	507,703	27.5	△153,642	30.3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⁴⁰⁾	306,427	13.5	162,059	8.8	144,369	89.1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272개 사업을 21개 실·본부·국에 편성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은 75개 사업, 1조 5,574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본부는 30개 사업, 1,802억 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

3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97)

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40)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자리노동정책관은 19개 사업, 1,790억 3,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4.7%, 1조 9,164억 3,900만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3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9〉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	2018			2017			증감액	증감률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계	272	2,262,214	100.0	269	1,846,842	100.0	415,373	22.5
서울혁신기획관	9	33,706	1.5	12	22,360	1.2	11,346	50.7
시민소통기획관	-	-	-	3	4,093	0.2	△4,093	△100.0
여성가족정책실	75	1,557,418	68.8	81	1,274,527	69.0	282,891	22.2
일자리노동정책관	19	179,033	7.9	14	145,305	7.9	33,728	23.2
비상기획관	-	-	-	1	176	0.0	△176	△100.0
기획조정실	4	1,903	0.1	-	-	-	1,903	1,902.9
경제진흥본부	23	62,253	2.8	8	10,572	0.6	51,681	488.9
복지본부	30	180,258	8.0	26	109,817	5.9	70,441	64.1
도시교통본부	12	94,861	4.2	8	49,294	2.7	45,568	92.4
문화본부	12	8,638	0.4	4	1,154	0.1	7,485	648.7
기후환경본부	6	1,867	0.1	2	163	0.0	1,703	1,042.4
행정국	6	11,036	0.5	10	12,510	0.7	△1,474	△11.8
평생교육국	6	8,959	0.4	14	58,396	3.2	△49,438	△84.7
관광체육국	19	62,276	2.8	14	22,330	1.2	39,945	178.9
시민건강국	17	29,575	1.3	37	82,192	4.5	△52,618	△64.0
도시공간개선단	3	1,327	0.1	3	273	0.0	1,054	386.0
안전총괄본부	6	1,634	0.1	7	1,745	0.1	△111	△6.4
도시재생본부	7	16,989	0.8	5	17,258	0.9	△270	△1.6
도시계획국	4	610	0.0	3	840	0.0	△230	△27.4
주택건축국	4	1,308	0.1	5	25,389	1.4	△24,081	△94.8
푸른도시국	3	2,539	0.1	4	2,499	0.1	41	1.6
소방재난본부	6	4,207	0.2	4	2,630	0.1	1,577	60.0
인재개발원	1	1,817	0.1	4	3,317	0.2	△1,500	△45.2

※ 자료근거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안 pp.10~14 발췌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등⁴¹⁾에 근거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⁴²⁾에 따라 작성되는 바 2018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8개 시·본부·국에 대해 38개 전략목표, 205개 정책사업목표, 47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4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2) 행정안전부 예규 제22호

〈표 20〉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현황 (2018)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18	2017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8	205	415	477	30,085,289	3,1123,583	△1,038,294
대 변 인	1	1	2	2	1,681	1,693	△11
서울혁신기획관	1	6	13	7	97,362	104,324	△6,962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11	4,557	43,334	2,236
여성가족정책실	1	5	12	13	2,442,968	2,217,743	225,226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7	236,257	222,776	13,481
비 상 기 획 관	1	1	2	6	3,813	3,497	316
정 보 기 획 관	1	7	12	20	89,372	87,414	1,958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1,637	1,594	43
기 획 조 정 실	1	13	22	25	728,797	954,481	△225,684
경 제 진 흥 본 부	1	12	20	23	304,902	351,129	△46,227
복 지 본 부	1	8	15	25	5,796,207	5,278,494	517,713
도 시 교 통 본 부	1	11	21	23	2,911,410	2,526,983	384,427
문 화 본 부	1	10	13	28	460,995	448,289	12,706
기 후 환 경 본 부	1	8	13	18	418,274	396,691	21,582
행 정 국	1	8	14	15	3,197,695	3,299,366	△101,671
재 무 국	1	7	11	13	2,320,699	2,270,883	49,816
평 생 교 육 국	1	4	11	9	3,341,217	3,751,719	△410,502
관 광 체 육 국	1	5	9	16	207,270	227,855	△20,585
시 민 건 강 국	1	9	30	24	444,541	435,924	8,617
도 시 공 간 개 선 단	1	2	3	3	9,111	10,940	△1,829
기술심사담당관	1	2	4	3	2,627	2,784	158
안 전 총 괄 본 부	1	10	10	34	925,727	888,128	37,599
도 시 재 생 본 부	1	10	17	20	1,688,096	1,595,329	92,767
도 시 계 획 국	1	5	6	8	29,180	29,582	△402
주 택 건 축 국	1	5	8	15	1,455,735	1,543,562	△87,828
푸 른 도 시 국	1	11	21	26	299,252	445,533	△146,281
물 순 환 안 전 국	1	4	7	9	3,014,751	1,117,721	△815,970
지 역 발 전 본 부	1	4	9	7	52,712	57,576	△4,865
소 방 재 난 본 부	1	9	21	19	1,633,642	1,509,809	123,833
도 시기반시설본부	1	5	7	6	427,359	1,080,794	△656,435
한 강 사 업 본 부	1	2	6	8	67,094	80,954	△13,860
인 재 개 발 원	1	1	4	4	16,824	16,745	78
서울역사박물관	1	1	5	5	14,879	14,409	469
시 립 미 술 관	1	1	7	4	12,353	11,980	373
교 통 방 송	1	1	6	3	69,975	66,355	3,620
의 회 사 무 처	1	3	23	8	26,223	25,184	1,039
감 사 위 원 회	1	4	7	6	1,648	1,592	56
시민감사옴부즈만	1	1	2	3	434	414	20

3) 시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⁴³⁾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되었음

- 2018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부터 편성된 주민참여예산과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협치예산을 통합하여 시민참여예산제로 개편한 바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⁴⁴⁾에 따라 500억원 규모로 ①시정참여형은 350억원, ②지역참여형은 125억원(자치구별 5억원), ③동 지역회의사업 25억원(동별 5,000만원) 등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선정 투표결과 766건, 592억 5,000만원을 선정하였으나 587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43)•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44)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2017년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 계획"

〈표 21〉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내역 및 의결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제출안	심사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회의 의결	
		의결	감액조정	의결	감액조정
'18년도	58,749	-	-	-	-
'17년도	49,960	49,960	0	49,960	0
'16년도	49,642	48,114	△1,528	48,656	△986
'15년도	50,037	45,347	△4,690	50,037	0
'14년도	50,348	42,921	△7,427	44,811	△5,537

※ 자료근거 : 시민참여예산과-1701 ('17.11.23)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⁴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⁴⁶⁾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⁴⁷⁾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69개 사업, 2,424억 6,4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5)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7) 2018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5조 2017년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표 22〉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수	2017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17→2018)	2018년도 예산액
총 계	69	(×148,565) 823,384	(×51,888) 242,464	(×222,927) 587,280
일 반 회 계	35	(×44,836) 167,457	(×25,838) 70,317	(×29,365) 132,564
특 별 회 계	34	(×103,729) 655,927	(×26,050) 172,148	(×193,562) 454,716
도 시 철 도	5	(×62,400) 358,606	(×2,256) 39,979	(×162,932) 228,269
교 통 사 업	5	(×-) 40,909	(×-) 34,424	(×-) 10,074
광 역 교 통	3	(×23,559) 42,039	(×11,080) 14,373	(×24,000) 133,639
주 택 사 업	3	(×2,000) 6,898	(×-) 3,315	(×-) 260
도 시 개 발	18	(×15,770) 207,475	(×12,714) 80,057	(×6,630) 82,474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혁신파크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3)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시설관리, 활동단체 입주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금 75억 3,500만원을 포함한 88억 8,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1단계 조성 공용공간 사무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48)이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본형성적 경비”로 한정하고 있는 바
- 사무집기류 구매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세출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8)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 아울러 적정한 세출과목은 1차적으로 사업주관부서가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나 정정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예산부서가 총괄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사업내용 확인곤란 및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편성 사례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62)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81)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의 지원형태인 동단위 계획형 341건과 구단위 계획형 7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 (시민참여)은 25개 자치구, 84개동, 341건에 대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15억 9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시민참여)은 성동구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한 7개 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46억 9,8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23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9)중 보조금의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

4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국고보조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 지방 보조금의 지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3〉 동단위·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동단위 계획형 시민예산	계	2,46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9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50
구단위 계획형 시민예산	계	7,0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8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352

○ 다만, 동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동단위 계획형(24억 6,000만원), 구단위 계획형(70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최소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임에도 정보를 극도로 제한한 채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바
-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동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회계연도중 사업내용을 의회에 별도 보고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는 바
 - 자치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민참여예산의 각 주체에게 재교부하고, 이 경우 자치구로 교부된 경상보조금이 사업운영 주체에게는 실질적인 운영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단위 계획형과 구단위 계획형에 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동단위 계획형 15억 900만원, 구단위 계획형 46억 9,800만원)에 대한 편성 여부는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224)

- 동 사업은 청년사업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금 2억 4,5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⁵⁰⁾중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에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자체기준만으로도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유사사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⁵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 의회에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바
-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제안하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중 개별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바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할 절차적 요건 또한 다른 세부사업의 경우와 같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54)

- 동 사업은 지난 '16년 9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5억 2,100만원과 수탁업체 선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50)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5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2)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⁵³⁾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 위한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현재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의 승인여부는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결과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3)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54

2) 여성가족정책실

□ 아동수당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0)

- 동 사업은 '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최대 72개월)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2,202억 1,000만원(국비 1,295억 3,500만원 포함)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정부 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국비(1조 1,009억 300만원)를 편성하고,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1,295억 3,500만원으로 가내시한 바,⁵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반영하여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17년 11월 현재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아동수당법안」을 포함한 10건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물론 법률안별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서로 상이하여 국회 의결결과에 따라 회계연도중 사업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5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052('17. 9.13) “2018년도 아동수당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안) 통보”

〈표 24〉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현황

법률안 (대표발의자)	지급대상	월별 지급금액	지급기준	연평균 비용추계
아동수당법안 (정부)	6세 미만	대통령령 위임 (예산안 : 10만원)		2조 9,567억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양승조 의원)	6세 미만	대통령령 위임	대통령령 위임	3조 2,516억원
아동복지법 (박인숙 의원)	6세 이하	○첫째 : 10만원 ○둘째 : 20만원 ○셋째 : 30만원	-	5조 5,621억원
아동복지법 (김광수 의원)	12세 이하	30만원	소득기준 있음	16조 6,005억원
아동복지법 (김승희 의원)	6세 이상 18세 미만	15만원	소득기준 있음	4조 9,490억원
아동복지법 (윤소하 의원)	12세 미만	10만원 이상	-	6조 2,758억원
아동복지법 (전혜숙 의원)	5세 이하	10만원	-	2조 9,958억원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12세 이하	○0~2세 : 10만원 ○3~5세 : 20만원 ○6세~12세 : 30만원 (이용권 지급)	소득기준 있음	15조 3,427억원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김부겸 의원)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수당위원회에서 결정 (복지부장관 소속)	출생순서·자녀 수에 따라 차등	9조 8,741억원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	18세 이하	10만원 이상	소득기준 있음 대통령령 위임	5조 3,282억원

※ 자료근거 : 국회, 「아동수당법안 검토보고」 ('17.11), p.8

□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3)

○ 동 사업은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 37억 7,500만원을 포함한 4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시점까지 지원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사이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⁵⁵⁾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동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17. 9)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⁵⁶⁾를 마련한 바 있으나,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근거가 마련된 지 수 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전절차

5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5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또한 미이행한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는 사업 계획 구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61)

- 동 사업은 아동복지시설(41개소)과 지역아동복지센터(18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편성된 699억 9,1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 증액된 766억 4,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마을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52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는 바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중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13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에도 사업별설명서중 산출근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⁵⁷⁾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는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5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63

□ 예산과목조정 및 절차이행 필요사업

-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17)
- 성평등주간기념행사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68)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소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편성된 8,900만원(국비 3,500만원 포함)보다 4억 8,400만원 증액된 5억 7,400만원(국비 2,300만원 포함)을 편성 요청한 바,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5억 2,900만원)중 1억원은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신규편성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성평등주간기념행사(舊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금년도(3,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사무관리비(6,000만원)중 1,000만원은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편성요청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⁵⁸⁾

-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을 위한 사무관리비(1억원)와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58)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17

사무관리비(1,000만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신규 행사성사업의 경우, '17년 9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하나,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임산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개최 등(도담도담 페스티벌)”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사후적이나마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결 이후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노동정책관

□ 대학 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03)

- 동 사업은 대학내 일자리센터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억 8,700만원 증액된 10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협조요청에 따라 정부, 대학, 지자체가 50:25:25의 부담비율로 공동출자하고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에는 매칭비율만 기재하고, 예산(안)총괄표에는 국비 편성액을 미기재한 바
 - 이는 동 사업의 재원구성 방식이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공동출자형태로 해당 대학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대응편성하여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10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선정('15년도~'17년도)된 9개 대학과 '18년도에 선정예정인 2개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 서울시에는 29개 4년제 대학과 9개 2년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동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5년간 대학내 일자리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 소재 대학 대부분을 사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매칭비율중 대학의 부담비율을 상향 건의하고,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낮추어 보다 많은 대학에 균등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에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정보기획관

□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정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86)

- 동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소재 에스플렉스센터(S-PLEX Center)를 위탁운영하고자 시설유지관리비(36억 5,500만원)를 포함한 민간위탁금 75억 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59)에 따르면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구분하고 있는 바
 - ①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의미하고, ②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로 구분하고 있음
 - 동 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48.7%, 36억 5,500만원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시설유지관리비를 민간위탁금에 포함시킬 경우, 행정안전부가 예규로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세출과목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세출과목은 예산심사중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의 구분취지를 고려하여 관행적인 예산과목 선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9)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5) 기획조정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90)

○ 동 사업은 '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60)에 의거하여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신설('15. 3)한 바

-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6년도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2항⁶¹⁾에 따라 대학회계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립대학운영비 572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22.2%, △163억 6,100만원 감액편성된 것이나

- '17년도의 경우, 100주년 기념관 건립 등 시설비 투자요인이 있어 당초 제출안보다 27억원이 증액의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 요청된 사례가 있어 현재 편성요청된 사업비가 적정규모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 제2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6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235)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⁶²⁾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⁶³⁾에 따라 취득세 보전분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액 중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하는 법정경비로 금년도 본예산(2,022억 800만원)보다 389억 1,900만원 증액된 2,411억 2,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동안 동 기금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년 6월, 13개 시·도지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시가 '14년 이전 미납입한 출연금(957억 5,100만원)을 일괄 납부하도록 권고하였음⁶⁴⁾

- 서울시는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이행계획⁶⁵⁾을 제출하였고, 금년도의 경우 2,0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6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14. 6.16.), "2014 중분조 1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분쟁조정"

65)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 (2014.8.)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16. 12.15)에 따라 '17년도 제 1회 추경을 통하여 △34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1,987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출연금 편성규모에 유동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매도시 교류**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299)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소요예산중 해외순방시 민간전문가를 동행하기 위해 민간인국외여비(1,200만원)를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⁶⁶⁾에 해당될 수 있는 바,

- 지난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⁶⁷⁾ 위반을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

66)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7)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

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의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68) '15회계연도의 경우, 다수 사업 69)이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국외여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민간인국외여비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여비 지원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도 동 사업에 편성된 민간인국외여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인 전문가 동행 필요 없었음”을 사유로 70) 예산현액 전액(2,4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중 민간인국외여비(1,200만원)는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68)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54 ('15. 8.24)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 중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 등을 요청

69) '15회계연도에 법령 및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어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8,000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3,000만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민간인국외여비 예산현액 1,000만원)

70) 서울시, 기획담당관-2597 ('17. 2.20)

□ **도시교류협력행사** (기획조정실 사업별설명서, p.328)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와의 도시교류 협력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 운영비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6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 자매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 ② 서울-하노이 문화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③ 서울-모스크바 문화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원, ④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0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⁷¹⁾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시·도의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행사운영비(4억 7,000만원)에 여러 행사를 위한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행사마다 소요예산이 각각 3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⁷²⁾ 동 사업의

7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바. 시·도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

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경우, 1개의 세부사업에 여러 행사들을 포함시키고 있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편성 사례에 해당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예규 등을 통하여 '18년도 예산편성부터 행사·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해 주요재정사업평가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한 바,⁷³⁾
- '18년도부터 신규 추진되는 ① 서울-하노이 문화교류행사(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② 서울-모스크바 문화교류 행사(행사운영비 2억원), ③ 서울 도시정책 공유 시장회의 개최(행사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기 전에 주요재정사업평가중 사전심사가 이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동 사업은 신규 행사성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신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4억원)에 대해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100

73) ①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42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안)」('17. 9), p.2

6) 경제진흥본부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75)

- 동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543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555억 5,5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임
- 최근 3년간 산업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순이익은 205억 6,100만원 증가하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 말 기준 938억 4,0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543억원)의 172.8%에 해당되는 여유재원(938억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5〉 산업진흥원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계	-	-	-	346,461	325,899	20,561	-	-	-
2016	149,610	55,769	93,840	121,290	113,966	7,324	93,840	79,010	14,903
2015	136,267	52,378	83,889	114,428	106,329	8,098	83,889	67,300	16,588
2014	133,559	66,065	67,493	110,743	105,604	5,139	67,493	43,131	22,333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산업진흥원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산업진흥원의 자본금(938억원 4,0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319억 6,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26〉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주1)}	투자자산 ^{주2)}	부채 ^{주3)}	현금성자본 (A+B-C)
서울산업진흥원	61,161	26,573	55,769	31,966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산업진흥원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319억 6,6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18년도 출연금(543억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제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27)

- 동 사업은 도봉구 마들로 창동역 인근에 로봇과학관을 2021년 9월까지 설립하고자 총사업비 280억원중 '18년도에 소요예정인 시설비 12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로봇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심사결과 ① 로봇과학관 운영방향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

련, ② 창동·상계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구체화, ③ 국비 확보 방안 마련, ④ 위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후 실시설계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⁷⁴⁾

- 그럼에도 소요예산중 현상설계보상비(1억 9,400만원) 이외에 설계비(10억 4,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전 세부계획 수립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정한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의결”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조건부적정” 및 “시 투자심사완료”로 기재하고 있는 바 사업주관부서가 투자심사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로봇과학관 대상 부지는 사유지로 현재 도시농업 시범공원이 운영되고 있어 토지보상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의 사업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며,⁷⁵⁾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예산편성전 완결되어야할 사전절차⁷⁶⁾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을 위한 방침⁷⁷⁾에도 '17년 10월부터 '18년 3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적시한 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설계를 위한 시설비(10억 4,000만원)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74) 재정관리담당관-12433 ('17.10.16), “2017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75)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17. 7

7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77) 경제정책과-6918 ('17. 8. 1) “(가칭)로봇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안)”

□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132)

-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1개소) 및 관내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9개소)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8)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⁷⁹⁾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서울특별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11월 30일 현재까지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9)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54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261)

- 동 사업은 시민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①시민시장 홍보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과 ②잠실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추진관련 초기시설물 설치비용 5,000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 ②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의 경우,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⁸⁰⁾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정하고 있는 바⁸¹⁾
 - 잠실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위탁, 대행 시키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시

80) 서울특별시 잠실 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2145, 2017.10.16. 시장제출)

81)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35

■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에게 위임, 위탁, 대행 시킬 일체의 근거가 미흡함에도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사업비는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 즉,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나 핸드메이드 마켓의 판매대와 조명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본형성적 지출로 간주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제출된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내용에 맞는 세출과목을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등 예산부서가 총괄조정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290)

- 동 사업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 한 바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행사운영비를 금년도(2,000만원)보다 50%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행사성 사업은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예산부서의 총괄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⁸²⁾

- 동 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사업부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였고, 예산총괄부서의 경우에도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⁸²⁾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평가결과가 “보통”에 해당 될 경우 증액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보다 오히려 50% 증액편성하고 있어 편성요청 된 행사 운영비는 제출안보다 감액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 패션왕-패션 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경제진흥본부 사업별설명서, p.380)

- 동 사업은 청소년 패션인재 육성을 위한 패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⁸⁴⁾는 시장이 시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민관예

8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2017. 9.

8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9924 ('17. 9.21) 및 예산담당관-13446 ('17.11.21)

8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회 등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의1(민관예산협의회 등)

- ① 시장은 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실·국·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제7항 생략)
- 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과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⁸⁵⁾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방식에 특정단체인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위탁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당시 시민참여예산을 총괄 지원한 재정관리담당관⁸⁶⁾에서 통보한 안내공문에는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되거나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업성격상 해당 기관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고,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면 적격으로 심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⁸⁷⁾

- 그러나 조례상 “운영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계획에서 부적격 사업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 총괄지원부서 과장이 결재한 안내공문만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조례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85)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 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86) 조직개편('17. 9)에 따른 시민참여예산 전담부서 변경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87)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6717 ('17. 6. 9) “2017 시민참여예산사업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안내”

■ 참여예산사업 부적격 기준 설명서

③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 성격상 해당 기관(단체)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고,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일 경우 적격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운영계획에 따라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나, 안내공문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참여예산제 시행 6년차를 맞아 기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대개편 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참여예산 총괄지원부서가 근거조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복지본부

□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복지본부 사업별설명서, p.318)

- 동 사업은 망우리묘지공원 내에 방문자를 위한 웰컴센터를 건립하고 공원진입로를 정비하고자 금년도(5,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78억 3,900만원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바, 지난 '17년 7월 투자심사를 이행한 결과 사업비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2단계 심사를 의뢰하도록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바 있음⁸⁸⁾

- 사업주관부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한 후 '18년도중 2단계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투자심사 이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동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8)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9607 ('17. 8. 8) “2017년 제3차(7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8) 도시교통본부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사례

-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57)
-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0)
- 지하철 역사내 스마트도서관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3)
- 지하철 명동역 테마계단 조성(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66)
-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362)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지하철역에 승강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출자금을 편성요청하고, 개화산 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①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영등포시장역, 증산역, 화곡역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출자금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②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은 창동역1, 2번 출입구 간 연결통로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출자금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③ 지하철 역사내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지하철역 2개소(이수, 노량진)에 무인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출자금 1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④ 지하철 명동역 테마계단을 조성하고자 출자금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⑤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캐노피 설치는 개화산역 주차장에 캐노피(53구획)를 설치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①~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⁸⁹⁾에 따르면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①~⑤)의 경우, 이미 자체기준으로 사업선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출자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⁹⁰⁾ 관련 세부사업(①~④)에 대한 별도의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난 9월,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중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가 출자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9월 1일이며 시민참여예산사업은 9월 6일 최종선정 된 바 상임위가 의결하며 며칠 후 선정예정인 사업내용까지 미리 포함하여 의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⁹¹⁾

89)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90)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1) 본회의 의결('17. 9. 6)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출자동의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의결을 한 바 없음

- 또한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운영하고자 서울시설공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⁹²⁾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까지 관련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 바

-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 자체선정기준에도 벗어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92)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9) 문화본부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459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432억 7,700만원)보다 26억 9,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임
- 최근 3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손실은 319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무상대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말 기준 1,110억 9,1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459억원 7,600만원)의 241.6%에 해당되는 여유재원(1,111억 9,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7〉 문화재단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계	-	-	-			△31,998	-	-	-
2016	120,339	9,248	111,091	53,419	66,451	△13,032	111,091	102,998	8,093
2015	136,643	12,519	124,123	53,780	65,377	△11,597	124,123	117,722	6,401
2014	144,032	8,310	135,721	47,880	55,249	△7,369	135,721	126,943	8,778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문화재단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문화재단의 자본금(1,111억 9,1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971억 4,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28〉 서울문화재단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주1)}	투자자산 ^{주2)}	부채 ^{주3)}	현금성자본 (A+B-C)
문화재단	106,394	0	9,248	97,146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문화재단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971억 4,6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 요청된 '18년도 출연금(459억 7,600만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디자인 재단에 대한 출연금 296억 8,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279억 8,700만원)보다 16억 9,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임
- 2016년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면 순이익은 1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경우에도 '16년도말 기준 134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어

- 편성요청된 '18년도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금(296억 8,700만원)의 45.1%의 여유재원(134억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29〉 서울디자인재단 재무상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자본금 관련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손익	계	기본재산	이익잉여금
2016	17,518	4,115	13,402	44,967	43,896	1,071	13,402	1	13,401
2015	15,591	3,260	12,331	35,231	39,531	-4,299	12,331	1	12,330

※ 자료근거 : 2014~2016 서울디자인재단 재무감사보고서

- 특히 '16회계연도말 기준 서울디자인재단의 자본금(134억 200만원) 중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은 103억 3,3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30〉 서울디자인재단 현금성 자본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유동자산 ^{주1)}	투자자산 ^{주2)}	부채 ^{주3)}	현금성자본 (A+B-C)
서울디자인	14,448	0	4,115	10,333

주1)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자산

주2)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주3)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자료근거 : 공기업담당관-12868(2017.10.16.)

- 서울디자인재단의 '16년도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자본금이 103억 3,300만원인 것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18년도 출연금(296억 8,600만원)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 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652)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통해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⁹³⁾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⁹⁴⁾
 -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11월 27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3)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94)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국고로 추진되는 동일 내용의 사업외 시민참여편성사례**

- 송파구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시민참여)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78)
- 송파2동 새마을문고 작은문화공간 조성(시민참여)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81)

○ 송파구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시민참여) 사업은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송파2동 새마을문고 작은문화공간 조성(시민참여)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명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작은도서관 사업의 경우, 시설조성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며 운영비는 시비를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어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에 시비를 단독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편성사례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19억 100만원) 사업을 서울시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제로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대상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헌책 보물섬 조성**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898)

- 동 사업은 '15년 6월부터 '18년 7월까지 송파구 신천유수지 부대 시설을 활용하여 헌책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7억 6,100만 원을 포함한 13억 1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16회계연도로부터 시설비 28억 1,000만원이 '17년도 상반기 공사착수예정 등을 사유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명시이월 된 사례가 있으나⁹⁵⁾
 - '17년 11월 현재 명시이월 된 예산현액중 0.7%, 1,9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고, 27억 9,100만원을 '18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⁹⁶⁾
 - 리모델링 공사라 하여도 시설조성을 위한 공기를 고려하면 '18년도로 이월될 예산현액(27억 9,100만원)과 '18년도 편성요청분(7억 6,100만원) 모두를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설비 편성요청액을 제외하고, 헌책 보물섬 조성후 지출예정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해 '시설 조성후 후속 예산 확보' 등으로 편성 요청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95)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

96) 공원녹지정책과-20162 ('17.11.16)

10) 기후환경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275)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⁹⁷⁾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 전출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의 경우, 세출과목중 전출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고 있고, 관련 조례 제28조⁹⁸⁾를 확대해석할 경우에도 이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명시한 것으로서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대행사업에 해당될 경우, 전출금이 아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7)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98)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동 예산안에 편성된 전출금의 경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후 본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처음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조금과 장기대부로 조례로써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전출금 편성과 에너지공사의 전입금 편성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지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63)

- 동 사업은 폐중소형가전 수거·운반,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7억 8,400만원을 포함한 30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동안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여 '18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위탁운영 할 계획인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의 법정결시한(매년도 12월16일) 이후인 12월18일 소관 상임위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민간위탁금을 의결할 경우, '先예산확보 後사전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동 민간위탁금은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명 수정 필요

-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 기금 출연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97)
 -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자원기금 출연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402)
- 행정안전부의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세부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은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내용과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과목인 바⁹⁹⁾ 전출금보다 사전절차가 엄격한 출연금을 세부사업명에 포함시킨 것은 사업주관부서가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행정국

□ 조정교부금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40)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¹⁰⁰⁾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22.6%를 재원으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임
- 편성요청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2조 6,444억 2,500만원)보다 2,384억 9,800만원 증액된 2조 8,829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지난 '16회계연도 결산결과 보통세 예산액과 결산액간 차액 4,651억 2,600만원이 발생하여 금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4,235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가 있고,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221)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보다 6.3%, 1조 4,151억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18년도에도 '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후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00)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표 31〉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1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산출내역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2,644,425	423,537	3,067,963	'17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423,537 - '16년도 결산차액 465,126 - '10년 초과교부금 정산(최종) △41,589

□ **시민참여예산 부적합 편성사례**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73~285)

- 서울시는 지난 '12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 예산안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예산편성과정에 적용하고 있음
- 행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중 동 마을문고 및 자치회관 시설개보수를 목적으로 4건, 1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 한 바
 - 시민참여예산제가 매년도 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도 자치구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음¹⁰¹⁾
 - 동 마을문고와 자치회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치구 일뿐만 아니라이며 사업내용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검토되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승인될 경우, 향후에는 시민참여예산제의 당

101)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초 취지와는 달리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편성 요청된 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자치구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성 시민참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별설명서
1	마포구 도화동 마을문고 이중 슬라이드 서가 설치 (시민참여)	20	p.273
2	마포구 서강동 마을문고 서가 추가 설치(시민참여)	20	p.276
3	마포구 성산2동 자치회관 전등 교체(시민참여)	4	p.279
4	마포구 망원1동 마을문고 공간개선(시민참여)	80	p.282

12) 재무국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68)

- 동 사업은 시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15억 300만원)보다 18억 2,600만원 증액된 33억 2,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11억 5,200만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6억 1,500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금년도(1억 7,000만원)보다 9억 8,2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됨¹⁰²⁾
- 감정평가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1년 이내에 평가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에 해당되나,¹⁰³⁾ 공유재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기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물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

102) 서울특별시(재무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p.69

■ 감정평가수수료 증가사유

- 서울의료원 매각 및 국공유지 교환 수요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경우, 지난 2015년도 2차례, 2016년도 1차례 추진된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총 12억 7,800만원('15년도 6억 6,300만원, '16년도 6억 1,5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바,
- 유사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각가능성,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하여 매각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했을 것이나, 지난 '13년 11월과 '16년 11월에 수립된 방침만이 있을 뿐¹⁰⁴⁾ 이를 보완한 추진계획이 11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지난 11월 8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28일 의결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절차이행을 위한 필수경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표 3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편성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안)	2017	2016	2015
편성액	615	-	663	623
집행액	-	-	615	663

104) ① 서울시, 자산관리과-14070 ('13.11.22)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계획”

② 서울시, 자산관리과-14040 ('16.11.1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매각 추진계획”

13) 평생교육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p.107~119)

-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통세의 10%¹⁰⁵⁾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197억 1,500만원 증액된 1조 2,301억 7,0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담배소득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4억 4,200만원 감액된 2,809억 7,2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¹⁰⁶⁾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968억 5,000만원 증액된 1조 4,581억 8,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105) 지방세 시세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취득세, ②주민세(균등분), ③자동차세, ④레저세, ⑤담배소비세, ⑥지방소비세, ⑦지방소득세(소득분)

106)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① 취득세 등록분 중 100분의 20(=취득세(취득분+등록분)의 100분의 10), ②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③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④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⑤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⑥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⑦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이내)을 포함한 비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6억 5,100만원 감액된 510억 2,500만원을 조례상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90억 5,5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4〉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8년도 (제출안)	'17년도 (본예산)	증 감	지 원 근 거
지방세출	1,230,170	1,110,455	119,7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담배소비세출	280,972	285,414	△4,442	”
지방교육세출	1,458,183	1,361,333	96,850	”
학교용지매입비부담	9,055	48,181	39,126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경비 보조 (조례상전출금)	51,025	56,676	△5,65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 금년 3월, 시·도의 일반회계와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표 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

개 정 전	현 행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u>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u>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u>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u>

※ 개정 : 2017. 3.21

시행 : 2017. 9.2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여야 할 법정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¹⁰⁷⁾

1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¹⁰⁸⁾
- 「지방재정법」 상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이 있는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¹⁰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추진경위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전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도 없음
- 다만, '18년도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분담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률이 일반회계와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

10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109)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로만 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50)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금년도에 편성된 37억 9,900만원보다 10억 3,300만원 증액된 48억 3,2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¹¹⁰⁾를 근거로 출연금을 편성 요청한 바,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확보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편성 요청된 출연금(48억 3,200만원)중 **모두의 학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 1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¹¹¹⁾이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 평생교육진흥원은 **모두의 학교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게 되어 **모두의 학교 임차료** 상당액(1억 5,300만원)은 출연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48억 3,200만원)중 **모두**

1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11) '17.11.30.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상정예정

의 학교 입학료 상당액(1억 5,300만원)을 세입·세출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시민참여)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75)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2억 700만원을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월 정보화타당성 예비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¹¹²⁾ 정보화타당성 예비 심사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¹¹³⁾ 및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¹¹⁴⁾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할 절차라는 점에서 동 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기준과 절차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지난 9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선정 되었음에도¹¹⁵⁾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1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75

113)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114)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15)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1275 ('17. 9.12)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업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99)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89)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84)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소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특화시설 6개소¹¹⁶⁾에 대한 민간위탁금 64억 9,900만원을 포함한 66억 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청소년특화시설(6개소)중 **청소년 미디어센터**의 경우, '18년도 위탁운영비(1년분)를 지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3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규정이 신설('12. 3)되기 이전에 최초 위탁이 개시('99. 7)되어 그동안 한 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인 바,

116)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드림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 현재 위탁기간('16. 7~'18. 6)¹¹⁷⁾ 만료 후에도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¹¹⁸⁾에 따라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 입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민간위탁을 기 실시중인 서울영어·창의마을 3개소(수유캠프, 풍납캠프, 관악캠프)에 대하여 단체입소 학생의 참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서울영어·창의마을 3개소(수유캠프, 풍납캠프, 관악캠프)에 대하여 학교단체 입소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9,500만원을 포함한 5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영어·창의마을(3개소)중 **수유캠프**의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규정이 신설('12. 3)되기 이전에 최초 위탁이 개시('06. 3)되어 그동안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117) 서울시, 청소년담당관-2537 ('17. 2. 2) “-서울시 청소년미디어센터- '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1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6567호, '17. 7.13.일부개정)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현재 위탁기간('15. 4~'18. 4)¹¹⁹⁾ 만료 후에도 연속하여 재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수유캠프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향후 재위탁 동의안이 적기에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확실한 바

- 재위탁 동의안 제출 및 의결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연중 실시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 적정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230)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시립청소년수련관(21개소)에 대해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180억 1,90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억 2,200만원을 포함한 184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억 2,200만원의 경우**, 서울시 청소년시설협의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편성요청한 것이나

119) ①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2295 ('15. 3. 5)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추진계획”
②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4475 ('15. 4.24.)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등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해당 세출과목은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를 편성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 요청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중 실제 소요예정인 운영비 2억원을 제외한 1억 2,200만원은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기준상 운영비 이외의 사업비 편성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내용의 소요액(1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적정 세출과목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 시민건강국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69)

- 동 사업은 '16년 3월부터 '19년 12월까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 58억 500만원을 포함한 64억 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초 '16년 3월부터 '19년 3월까지 37개월간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2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시설 면적확대(4,350㎡→5,131㎡)가 필요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¹²⁰⁾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연차별투자계획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시설비(142억 1,200만원)보다 35억 1,600만원이 증가된 177억 2,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의료시설 면적확대 등으로 설계기간(2개월 증가)과 공사기간(7개월 증가)이 연장됨에 따라 11월 현재 금년도 시설비 예산액(35억 3,600만원)중 7억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²¹⁾
 - 지출원인행위 조차 못한 나머지 시설비 예산액에 대해 명시이월(25억 9,300만원)을 승인요청 하고 있어 사업공정과 연차별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공기연장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20) 보건의료정책과-26690 ('17. 8.24),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 사업규모 변경 시행계획"

121) 보건의료정책과-35662 ('17.11. 9),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 시설비의 경우,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미 '17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 요청된 시설비 25억 9,300만원이 내년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바

-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가용될 예산현액 규모가 과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액(58억 500만원)중 명시이월 요청액(25억 9,300만원)만큼 감액조정하고, 회계연도중 진행되는 공정을 고려하여 추가소요액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 도시공간개선단

□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19년 9월 개최예정인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¹²²⁾를 기획·홍보하고자 17억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① 서울디자인재단에 비엔날레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교부하기 위한 **출연금** 3억원과 ② 당초 사무국에서 수행하던 감독·큐레이터 운영 등을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신규 편성된 **사무관리비** 1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출연금**(3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¹²³⁾를 근거로 지난 9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14억 5,400만원)의 경우, 감독에 대한 국외업무여비(7,000만원)와 큐레이터에 대한 국외업무여비(3,300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나,

122) 격년제(홀수년)로 개최되는 행사로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17년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됨

123)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법령 및 조례에 별도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¹²⁴⁾에 해당될 수도 있어¹²⁵⁾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 근거가 법령 및 조례상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중 국외업무여비 1억 300만원(감독 국외업무여비 7,000만원, 큐레이터 국외업무여비 3,300만원)에 대해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84)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별설명서, p.88)

124)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125) '15년 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사유로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 등을 제공한 사업의 중지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음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154 ('15. 8.24)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 중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 사업의 경우, 미래 서울이 직면한 도시문제 및 미래가치에 대한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서울시 유휴지를 활용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포함한 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¹²⁶⁾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¹²⁷⁾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27)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16) 안전총괄본부

□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사업

-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90)
-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시민참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1095)

○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자연채광 기술을 활용하여 종각역 북측 지하공간을 지역거점 활성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5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추진절차별 예산집행계획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 예산안이 제출('17.11. 8)된 이후 지난 11월 9일 수립된 방침¹²⁸⁾에는 '17년 12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8년 1월 설계용역을 추진하며, '18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소요예산(25억원)중 설계용역비 2억원, 공사비 21억 2,000만원, 감리 등을 위한 소요예산 1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음

128) 서울시, 안전총괄과-15008 ('17.11. 9)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추진계획”

-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시민참여)**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림고가 보도계단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소요예산(4억 5,000만원)중 '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4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¹²⁹⁾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³⁰⁾
 -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 동 사업은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17.11.11)을 경과한 11월 27일 현재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29)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0)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따라서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안전총괄본부 사업설명서, p.106)

- 동 사업은 노후 도시기반시설 및 방재·안전 등 서울시의 당면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출연금 83억 7,700만원을 포함한 84억 5,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지난 11월 21일 상임위로부터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 출연기관 설립전 이행절차인 ①정관 등 제규정, ②법인 설립허가(행정안전부), ③설립등기, ④출연기관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출연기관 설립이전까지 출연금을 편성하여도 실제 지출까지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출연기관 설립 준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4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제외한 출연금 83억 7,700만원은 삭감하고, 설립이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예산 부적합 편성사례**

- 종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0)
-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3)
-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6)
-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29)
-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 (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p.244)

○ 동 사업은 보도정비 등 소액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사업대상지의 관리주체가 자치구로서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¹³¹⁾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향후에도 자치구가 관리하는 보도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요청 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자치구 관리보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6〉 보행환경개선 등 관련 시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별설명서
1	종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시민참여)	40	p.220
2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시민참여)	20	p.223
3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시민참여)	100	p.226
4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시민참여)	30	p.229
5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시민참여)	181	p.244

131)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17) 도시계획국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89)

○ **서울역 공간구조 개선 구상**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서울역 통합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서울역 지상 및 지하의 세부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¹³²⁾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³³⁾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 요청한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2)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3)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18) 주택건축국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199)

-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205)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주택건축국 사업별설명서, p.209)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사업의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미지정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사업은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정리 및 관리 방안 마련 및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사업은 2018년에 지정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재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요청한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9) 푸른도시국

□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27)

- 동 사업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 및 축제 등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0억 9,500만원을 포함한 13억 6,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에 편성한 사무관리비의 경우, 시민프로그램 공모 및 기획(5억 7,000만원)과 석유이후 문화생태계 구축 운영(5억 2,5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출된 바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을 ①시민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②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③석유이후 삶디자인 프로젝트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행사진행을 위한 소규모 용역 등의 경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도의 경우, 사무관리비 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30% 이상을 “개원기념 공연프로젝트 미인(MIIN)” 등의 행사성 용역계약에 지출원인행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³⁴⁾
 - 사무관리비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상 집행용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으나 「예산편성기준」에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한정하고 있고,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¹³⁵⁾

134) 행정안전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사업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예술인이나 공연자에 대한 소규모 용역비용을 집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편성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우회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35)

- 동 사업은 공원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의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전체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¹³⁶⁾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에도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³⁷⁾

135)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17.

136)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137)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 p.5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9월 사업추진방침이 수립되어¹³⁸⁾ 지난 11월 8일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1월 27일 현재까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138)

- 동 사업은 중구 소재 배재어린이공원 등 8개 자치구에 11개 사업 내용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9,800만원을 포함한 11억 2,400만원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의 대상지가 구 공원으로서 관리주체가 자치구이며 편성 요청된 사업내용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사료되며 '18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자치구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을 부적격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¹³⁹⁾
 - 구공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요구사례별로 편성하기 보다는 서울시가 구공원을 종합진단하여 시비로 연차지원 함으로써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기능보강을 일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38)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15803 ('17. 9. 7) “공원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안)”

139)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p.17 (사업 적격여부 심사기준)

〈표 37〉 구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성 시민참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액
1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26
2	중구 배재어린이공원	200
3	중랑구 어린이공원	100
4	은평구 박석어린이공원	50
5	강서구 백연어린이공원	70
6	강서구 등서어린이공원	60
7	서초구 어린이공원	50
8	강남구 도산근린공원 등	60
9	강남구 학동근린공원 등	120
10	목련어린이공원의외 14개소	288
11	사가정공원	100

□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50)
-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95)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는 비용 산출의 적정성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심사받도록 정하고 있음¹⁴⁰⁾

140)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61

-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사업은 잠원동 길마중길 시설녹지(1억 원), 월계주공1단지 연변 시설녹지(2억 5,000만원), 중구 충정 시설녹지(8,000만원)에 대한 보수정비를 목적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18년 1월~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3월~4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산사태 예방(시민참여) 사업은 성동구 동호초등학교 주변(7,000만원), 성동구 응봉산 주변(8,000만원)의 사면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18년 1월~2월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추진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⁴¹⁾ 시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시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중 하나라는 점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 선행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일내용의 계속사업외 시민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한 사례

-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97)
-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10)

- 에코스쿨 조성(시민참여)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동작구 영등포고(1억원), 동작구 영본초(1억원), 송파구 마천초 및 남천초(2억 6,000만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41) 기술심사담당관-19391 ('17.11.10)

- **근교산 등산로 정비(시민참여)**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 등 6개소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1,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에코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계속사업으로 지난 '13년도부터 '17년 12월까지 205개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였으며 '18년도의 경우, 27억 3,500만원을 포함한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계속사업으로서 '18년도의 경우, 국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대응편성하여 25개 근교산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적시된 적격여부 심사 기준을 고려할 때 부적격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서울시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통하여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 물순환안전국

□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21)

○ 동 사업은 물순환 주민협의체 및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5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¹⁴²⁾ 동 사업은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2억 9,000만원)와 별도로 “물순환 시민문화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3,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예산과목(통계목) 설정시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6년 6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 개정되어 행사·축제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됨에¹⁴³⁾ 따라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142)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 7), p.117

■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14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개정('16. 6)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확대

■ 자체심사

- 시·도 자체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시·군·구 자체심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시·도 의뢰심사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동 사업의 경우, 행사 개최 및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억 2,000만원(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여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⁴⁴⁾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미이행 하였으며, 예산과목도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1억 8,300만원) 중 “물순환 시민문화제 홍보비” 3,000만원은 감액조정하고, 행사운영비(2억 9,000만원)를 활용하여 일부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용역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340)

-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45)

-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437)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¹⁴⁵⁾에 따라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시설비 4억 8,300만원)과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시설비 4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44)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13642 (17.11.17)

145)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이하 ‘노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실태평가보고서의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¹⁴⁶⁾ 사업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유수지 전방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유수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하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6)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부칙 제2조(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이월을 전제로 예산 편성된 사업**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64)

■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물순환안전국 사업별설명서, p.156)

■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p.826)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18년 1월부터 '19년 3월
까지 기술용역을 추진하여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2018년도 추진일정”을 '19년 3월
용역이 준공되면 8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예산의 이
월을 전제로 '18년도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는 '18년 2
월부터 '19년 2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한강 수질오염 현황 조사·
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2월까
지 2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은 '18년 3월부터 '19년 4월까지 학술용역을 통해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및 월류수로 인한 하천영향 조사 등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중 “2018년도 추진일정”에 '19년 4월까지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의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⁴⁷⁾에 대한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¹⁴⁸⁾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월제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하지 못할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등한시한 것은 물론 부서 이기주의적 편성사례일 수 있음

147)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48)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의 소요예산(2억원)과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의 소요예산(1억 2,000만원)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상 산출 근거조차 기재하지 않아 예산심사시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주관부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8억원에 대한 이월을 전제로 “기술용역”을 위한 소요예산(10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는 '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사업별설명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11월 30일 현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8년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8〉 이월을 전제로 예산 편성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회계명	세부사업명	'18년도 예산안	검토내용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일반회계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1,000	○ 사전절차 미이행 - 11월 현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미이행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9. 3 : 용역준공시 8억원 집행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 수질개선 특별회계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200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8. 2 ~ '19. 2 : 2억원 집행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120	○ 이월전제 예산편성 - '18. 3 ~ '19. 4 : 1억 2,000만 원 집행

21) 지역발전본부

□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 (지역발전본부 사업설명서, p.70)

○ 동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창동환승 주차장부지에 대해 유상이관비 133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¹⁴⁹⁾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다른 회계로 이관할 경우 유상이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¹⁵⁰⁾은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유상이관비는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매년 133억 9,900만원씩 10년간 분할납부할 예정 인 바 유상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고정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의 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예산 소요현황

(단위 : 백만원)

	총이관금액	기납부액 ^{주1)}	'18년도 편성액	'18년도이후 미상환액
창동환승 주차장부지	133,990	0	13,399	120,591

※ 주1) '17년 11월 현재

14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5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2) 서울역사박물관

□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별설명서, p.116)

- 동 사업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 백인제 가옥의 전시 해설안내, 시설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1억 8,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행사운영비를 금년도(5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바
- 행정안전부는 행사운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예산부서의 총괄평가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¹⁵¹⁾ “우수” 이상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로써 통보하였음
 - 동 사업에 대한 행사성 사업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결과 사업부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였고, 예산총괄부서도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¹⁵²⁾ 행사운영비에 대한 증액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 행정편의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18년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세출과목을 맞게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증액편성원인과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2017. 9.

152)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11502 ('17. 9.29) 및 예산담당관-13446 ('17.11.21)

2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시민참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26)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옴부즈만을 양천구에 설치·운영하고자 금년도(3,000만원)와 동일한 규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금년도에도 이미 **옴부즈만제 운영(주민참여)** 사업을 양천구에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편성된 사례가 있어 동 사업은 동일 지역에 동일 내용의 사업을 2년 연속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¹⁵³⁾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또한 단년도 사업이 아닐 경우, 부적격사업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¹⁵⁴⁾ 동 사업은 참여예산사업 선정시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조례 및 방침에 따른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154)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2245 ('17. 2.23)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7 운영계획”

■ 지원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3) 기타 검토의견

1) 시설관리공단 대행사무에 대한 의회 미동의

- 서울시는 '17년 1월부터 시설공단 위탁사무 23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조례개정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¹⁵⁵⁾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설공단의 대행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¹⁵⁶⁾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를 포함한 7건의 대행사업이 예산안 제출전까지 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155) 조직담당관-329 (2017. 1. 7.), “투자·출자·출연기관 조례개정 협조요청”

15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동 대행사업과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근거유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을 감액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0〉 대행사업 관련 의회 미동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주1)}	위탁종료일	민간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18. 1.24	2,315	기획조정실 p.362~366
2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 관리 (남산1·3호터널)	'17.12.31	5,313	교통본부 p.43~52
3	장충체육관 운영	'16.12.31	1,809	관광체육국 p.223~227
4	고척스카이돔 운영	'17.12.31	7,236	관광체육국 p.218~222
5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17.12.31	593	물순환안전국 p.243~246
6	청계천 시설 유지 관리	'17.12.31	8,483	물순환안전국 p.247~250
7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16.12.31	12,172	푸른도시국 p.85~88

※ 주1)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여 신규 대행동의 필요한 사업

2)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 (1) 사업예산은 ①수입 6,760억원, ②지출 5,408억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예산은 ①수입 1,439억원, ②지출 2,791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¹⁵⁷⁾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200억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바¹⁵⁸⁾,
- 간주처리와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¹⁵⁹⁾

157) 자본적 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1,351억 1,000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 (1,351억 1,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중 기재하고 있음

158)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14조(간주처리)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159)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하 생략)

- 간주처리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내용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편의적 운용방법의 하나로서 기재되어 있는 바, 간주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200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3.8%, 30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표 41〉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감	
		%		%		%
계	820,000	100.0	790,000	100.0	30,000	3.8
사업비	566,997	69.1	527,639	66.7	39,358	7.5
투자사업비	217,387	26.5	194,308	24.6	23,079	11.9
경상사업비	349,610	42.6	333,331	42.1	16,279	4.9
행정운영경비	180,746	22.0	184,600	23.4	△3,854	△2.1
채무상환	64,484	7.9	71,024	9.0	△6,540	△9.2
예비비	7,773	1.0	6,737	0.9	1,036	15.4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권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p.10

-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7.5%, 393억 5,800만원 증액된 5,669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2.1%, △38억 5,400만원 감액된 1,807억원 4,600만을 편성한 것이며,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2%, △65억 4,000만원 감액된 644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¹⁶⁰⁾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 사업예산은 74억 7,200만원, (2) 자본예산은 3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60) 「지방공기업법」 제31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 (1) 사업 예산은 ①수입 7,637억원, ②지출 3,475억원으로 계획하고, (2) 자본예산은 ①수입 738억원, ②지출 4,900억원으로 계획함에 따라¹⁶¹⁾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375억원으로 편성요청 한 것임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4조를 통해 회계연도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을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바¹⁶²⁾,
- 간주처리와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¹⁶³⁾ 간주처리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내용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편의적 운용방법의 하나로서 기재되어 있는 바, 간주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1) 자본적 수입 및 지출중 지출액 대비 수입액 부족분(4,162억 2,200만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 (4,162억 2,2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칙중 기재하고 있음

16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제14조(간주처리)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금, 기타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16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하 생략)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375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
계		837,585	100.0
사	업 비	777,169	92.8
	투 자 사 업 비	489,290	58.4
	경 상 사 업 비	287,879	34.4
	행 정 운 영 경 비	31,712	3.8
	재 무 활 동	26,912	3.2
	예 비 비	1,792	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서(안) 발취

- **사업비**는 7,771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17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재무활동**은 269억 1,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18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¹⁶⁴⁾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 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12억 9,200, (2)자본예산은 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164) 「지방공기업법」 제31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타 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감	%	내 역
계	9,576,887	9,597,206	△20,320	△0.2	
일 반 회 계	8,589,877	7,780,657	809,221	10.4	
자치구지원	4,421,736	4,074,135	347,600	8.5	
징수교부금	410,638	374,877	35,760	9.5	시세징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882,923	2,644,426	238,497	9.0	보통세의 22.6%
채정보전금	32,380	33,280	△900	△2.7	전국자동차면허세 보전액 × 서울시 안분율(16.99%)
공동재산세교부	1,095,795	1,021,552	74,243	7.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3,178,292	3,008,523	169,770	5.6	
담배소비세지원	280,972	285,415	△4,442	△1.6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230,170	1,110,455	119,715	10.8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458,184	1,361,334	96,850	7.1	지방교육세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87,333	189,487	△2,153	△1.1	보통세 0.6% 이내, 학교급식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9,056	48,181	△39,126	△81.2	학교용지 매입비의 50%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177	4,177	-	-	도서관운영비 지원 등
교육급여	8,400	9,474	△1,074	△11.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출자금	-	2,500	△2,500	△100	
농수산식품공사	-	2,500	△2,500	△100	
출연금	549,765	475,815	73,950	15.5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	2,673	2,621	52	2.0	자원봉사 민간파트너십 구축
서울연구원	23,994	21,998	1,996	9.1	서울연구원 연구 및 운영비
서울여성가족재단	7,613	4,417	3,196	72.4	서울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26,222	21,483	4,739	22.1	서울복지재단 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비
지방공기업평가원	78	78	-	-	공기업평가 등 정책연구 등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3,000	6,505	△3,505	△53.9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에 담보지원
서울산업진흥원	54,300	55,555	△1,255	△2.3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서울문화재단	45,977	43,278	2,699	6.2	서울 문화예술진흥 도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종문화회관	28,826	24,486	4,340	17.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서울시립교향악단	12,566	11,690	876	7.5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및 운영비 출연
서울장학재단설립운영	11,518	9,758	1,760	18.0	서울장학사업 추진, 우수인재 발굴 양성
디자인재단	29,986	33,488	△3,502	△10.5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DDP운영, 패션산업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4,832	3,799	1,033	27.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 지원
서울디지털재단	9,870	6,777	3,093	45.6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및 디지털 산업 진흥
(가칭)서울기술연구원	8,377	-	8,377	순증	노후 도시기반시설 및 방재안전 등 연구 지원

구분	2018	2017	증감	%	내역
50+재단	13,540	10,633	2,907	27.3	50+ 재단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120 다산콜재단	17,184	13,838	3,346	24.2	120 다산콜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
공공보건의료재단	3,751	2,919	832	28.5	공공보건의료 활동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	200	-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연구활동 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	87	84	2	2.4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	241,128	202,209	38,919	19.2	연3천억 규모로 서울경가인천 지방소비세 인분비율에 따라 편성
한국지방세연구원	4,044	-	4,044	순증	지방세기본법 제145, 146조에 의거 출연
공사공단전출금	2,250	-	2,250	순증	
서울에너지공사	2,250	-	2,250	순증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기금전출금	209,382	160,882	48,500	30.1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13,901	100,500	13,401	13.3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52,475	43,097	9,377	21.8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사회복지기금	4,500	4,450	50	1.1	장애인·노인·주거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체육진흥기금	6,740	7,735	△994	△12.9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0	-	20,000	순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	3,000	2,000	1,000	50.0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	3,000	2,500	500	20.0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성평등기금	600	600	-	-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감채기금	4,166	-	4,166	순증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	1,000	순증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지원
부채상환	188,672	22,474	166,198	739.5	
지하철건설부채	-	6,424	△6,424	△100	지하철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채투차입금상환	188,672	8,730	179,942	2,061	채투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지방채상환	-	7,320	△7,320	△100	
반환금등	39,780	36,328	3,453	9.5	
국고보조반환금	38,707	35,978	2,730	7.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1,073	350	723	206.6	
특별회계	987,009	1,816,550	△829,540	△45.7	
자치구지원	38,998	38,293	705	1.8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6,817	36,131	685	1.9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의 30%
광역교통시설	253	233	20	8.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3%)
도시개발	1,928	1,928	-	-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징수액의 40%, 대부료징수액의 50%
출자금	311,323	300,891	10,432	3.5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29,925	83,503	△53,578	△64.2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100,500	82,500	18,000	21.8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임등
주택사업(공공원룸주택)	64,000	-	64,000	순증	
주택사업(사회주택)	21,797	-	21,797	순증	
지하철 노후시설물 재투자	81,685	78,831	2,854	3.6	1~4호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지하철 승강장편의시설	5,190	27,015	△21,825	△80.8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자본출자

구 분	2018	2017	증감	%	내 역
지하철역 시설물운영	291	291	-	-	시민안전지킴이 사업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	1,853	△1,853	△100	
지하철 승강장바상문 개선	-	10,760	△10,760	△100	
스크린도어 안전성 확보	2,986	5,360	△2,375	△44.3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600	1,600	△1,000	△62.5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내 경사로 설치
혼잡도 및 환경개선공사	2,210	-	2,210	순증	
지하철 공기질개선	-	6,578	△6,578	△100	
지하철 출입구 개선	1,050	-	1,050	순증	
지하철 역사내 도사판 설치	140	-	140	순증	
지하철 역사조성	950	2,500	△1,550	△62	
지하철 소음측정 사업	-	100	△100	△100	
기금전출금	2,600	2,600	-	-	
사회투자기금	2,600	2,600	-	-	
공사공단전출금	260,584	369,359	△108,775	△29.4	
주택사업	179,815	271,388	△91,573	△33.7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주택)
교통사업	80,769	97,971	△17,202	△17.6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 설치
재투예탁	55,446	120,000	△64,554	△53.8	
교통사업(주차장)	55,446	-	55,446	순증	잉여재원 재투예탁
주택사업(도시정비)	-	120,000	△120,000	△100	
부채상환	296,410	955,535	△659,125	△69.0	
지하철 건설부채	135,862	-	135,862	순증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재투차입금 상환	97,008	272,637	△175,629	△64.4	재투차입금 상환
기타지방채상환	63,540	682,898	△619,358	△90.7	도시철도공채발행 원리금 상환
반환금등	21,648	29,872	△8,224	△27.5	
국고보조반환금	19,148	28,072	△8,924	△31.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
과오납금등	2,500	1,800	700	38.9	

법정의무경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7	증감	%	주요증감사유
일반회계	10,534,963	9,527,507	1,007,455	10.6	
법정경비	10,061,338	9,266,497	794,842	8.6	
자치구지원	4,421,736	4,074,135	347,600	8.5	
징수교부금	410,638	374,877	35,760	9.5	시세증수액의 3%, 세외수입징수액의 3~50%
조정교부금	2,882,923	2,644,426	238,497	9.0	보통세 22.6%
재정보전금	32,380	33,280	△900	△2.7	전국 면허세 보전율×서울시 안분율(16.64%)
공동재산세교부	1,095,795	1,021,552	74,243	7.3	특별시분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교육청지원	2,986,782	2,814,859	171,923	6.1	법정지원금
담배소비세지원	280,972	285,415	△4,442	△1.6	담배소비세 45%
지방세지원	1,230,170	1,110,455	119,715	10.8	보통세 10%
교육세지원	1,458,184	1,361,334	96,850	7.1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매입비	9,056	48,181	△39,126	△81.2	학교용지매입비의 50%
교육급여	8,400	9,474	△1,074	△11.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특별회계법정지원	2,482,279	2,233,905	248,374	11.1	
교통사업(유가보조금)	342,098	293,256	48,842	16.7	자동차세 주행분(유가보조금)
교통사업(주차장시설)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주택개량지원)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주택사업(재정비축진)	129,276	117,166	12,110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904,931	820,164	84,767	10.3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의료급여기금	547,047	488,418	58,628	12.0	국·시비 50:50 매칭부담분 증가
소방안전	300,375	280,568	19,807	7.1	소방안전교부세 75%, 지역지원시설세 부동산분 100%
기금법정적립	170,541	143,597	26,944	18.8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113,901	100,500	13,401	13.3	최근 3년 보통세 징수평균액의 1.0%
자원회수시설기금	52,475	43,097	9,377	21.8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 난방비(70%)등 지원
감채기금	4,166	-	4,166		감채기금 이자
채무상환	188,672	22,474	166,198	739.5	
지하철건설부채	-	6,424	△6,424	△100.0	건설부채 상환도래 물량 감소
재투자입금상환	188,672	8,730	179,942	2,061.2	교통사업특별회계 재투자입금상환
기타지방채상환	-	7,320	△7,320	△100.0	
반환금등	39,780	36,328	3,453	9.5	
국고보조반환금	38,707	35,978	2,730	7.6	
과오납금등	1,073	350	723	206.5	
출연금	245,172	202,209	42,963	21.2	
한국지방세연구원	4,044	-	4,044	순증	보통세의 0.015%
지역상생발전기금	241,128	202,209	38,919	19.2	연3천억 규모로 지방소비세 안분비율로 편성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감	%	주요증감사유
특별회계	357,056	1,023,700	△666,644	△65.1	
법정경비	38,998	38,293	705	1.8	
자치구지원	38,998	38,293	705	1.8	
교통사업(교통유발부담금)	36,817	36,131	685	1.9	교통유발부담금징수액의 30%
광역교통시설	253	233	20	8.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3%
도시개발	1,928	1,928	-	-	체비지 매각대금의 (30%), 변상금(40%), 대부료(50%)
채무상환	296,410	955,535	△659,125	△69.0	
지하철 건설부채	135,862	-	135,862	순증	
재투자입금 상환	97,008	272,637	△175,629	△64.4	
기타지방채상환	63,540	682,898	△619,358	△90.7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및 선급이자
반환금등	21,648	29,872	△8,224	△27.5	
국고보조반환금	19,148	28,072	△8,924	△31.8	
과오납금등	2,500	1,800	700	38.9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7. 11. 8(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박진형(교통)
 - 부위원장 : 문영민(행정자치), 송재형(교육)
 - 위 원 : 김문수(문화체육관광), 오승록(보건복지), 유광상(도시안전), 전철수(도시계획), 한명희(환경수자원), 성중기(교통), 김용석(기획경제), 장인홍(교육)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7(목) 10: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8(금) 11: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일) 10: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1(월) 10:00 ~ 20: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수)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7. 12. 15(금) 10:0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문영민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43
----------	------------

2017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수정한다.

II. 수정 주요 골자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 별첨 : 1. 2018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2. 2018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세부내역 1부.
3. 명시이월 조서(추가) 1부. 끝.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2017. 12. 1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예산안

1. 예산총칙 수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제출안	수정안																																																																																																
<p>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회 계 별</th> <th style="width: 30%;">예산액</th> <th style="width: 50%;">일시차입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31,742,874,289</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0,000</td> </tr> <tr> <td>일반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2,673,130,007</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0</td> </tr> <tr> <td>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069,744,282</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0</td> </tr> <tr> <td> 기타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412,159,145</td> <td></td> </tr> <tr> <td>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127,037,897</td> <td></td> </tr> <tr> <td> (4) 교통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333,370,237</td> <td></td> </tr> <tr> <td>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59,912,647</td> <td></td> </tr> <tr> <td> (6) 주택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565,721,730</td> <td></td> </tr> <tr> <td> (7) 도시개발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179,424,859</td> <td></td> </tr> <tr> <td>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096,258,338</td> <td></td> </tr> <tr> <td>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8,338,661</td> <td></td> </tr> <tr> <td> (10) 소방안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22,094,776</td> <td></td> </tr> <tr> <td> 공기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657,585,137</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0</td> </tr> <tr> <td> (1) 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2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37,585,137</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113,379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62,113,379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이 하 생 략 -</p>	회 계 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1,742,874,289	600,000,000	일반회계	22,673,130,007	500,000,000	특별회계	9,069,744,282	100,000,000	기타특별회계	7,412,159,145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27,037,89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333,370,237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9,912,647		(6) 주택사업특별회계	1,565,721,73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179,424,859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58,338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38,661		(10)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공기업특별회계	1,657,585,137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85,137	50,000,000	<p>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회 계 별</th> <th style="width: 30%;">예산액</th> <th style="width: 50%;">일시차입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31,814,065,232</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0,000</td> </tr> <tr> <td>일반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2,466,451,303</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0</td> </tr> <tr> <td>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347,613,929</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0</td> </tr> <tr> <td> 기타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7,567,328,792</td> <td></td> </tr> <tr> <td>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165,087,897</td> <td></td> </tr> <tr> <td> (4) 교통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344,488,237</td> <td></td> </tr> <tr> <td>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67,312,647</td> <td></td> </tr> <tr> <td> (6) 주택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568,621,730</td> <td></td> </tr> <tr> <td> (7) 도시개발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275,126,506</td> <td></td> </tr> <tr> <td>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096,258,338</td> <td></td> </tr> <tr> <td>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28,338,661</td> <td></td> </tr> <tr> <td> (10) 소방안전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22,094,776</td> <td></td> </tr> <tr> <td> 공기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780,285,137</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000</td> </tr> <tr> <td> (1) 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20,00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r> <td>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60,285,137</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중 략 -</p> <p>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6,824,590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176,824,590천원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p> <p>제8조 <생 략></p> <p>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p>	회 계 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1,814,065,232	600,000,000	일반회계	22,466,451,303	500,000,000	특별회계	9,347,613,929	100,000,000	기타특별회계	7,567,328,792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65,087,89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344,488,237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7,312,647		(6) 주택사업특별회계	1,568,621,73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275,126,506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58,338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38,661		(10)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공기업특별회계	1,780,285,137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0,285,137	50,000,000
회 계 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1,742,874,289	600,000,000																																																																																															
일반회계	22,673,130,007	500,000,000																																																																																															
특별회계	9,069,744,282	100,000,000																																																																																															
기타특별회계	7,412,159,145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27,037,89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333,370,237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9,912,647																																																																																																
(6) 주택사업특별회계	1,565,721,73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179,424,859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58,338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38,661																																																																																																
(10)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공기업특별회계	1,657,585,137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585,137	50,000,000																																																																																															
회 계 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1,814,065,232	600,000,000																																																																																															
일반회계	22,466,451,303	500,000,000																																																																																															
특별회계	9,347,613,929	100,000,000																																																																																															
기타특별회계	7,567,328,792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65,087,897																																																																																																
(4) 교통사업특별회계	1,344,488,237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7,312,647																																																																																																
(6) 주택사업특별회계	1,568,621,730																																																																																																
(7) 도시개발특별회계	1,275,126,506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6,258,338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338,661																																																																																																
(10)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공기업특별회계	1,780,285,137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0,285,137	50,000,000																																																																																															

세입·세출 총괄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31,742,874,289	71,190,943	346,146,481	△274,955,538	31,814,065,232
일 반 회 계	22,673,130,007	△206,678,704	38,920,834	△245,599,538	22,466,451,303
기 타 특 별 회 계	7,412,159,145	155,169,647	184,525,647	△29,356,000	7,567,328,79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127,037,897	38,050,000	61,750,000	△23,700,000	1,165,087,897
교통사업특별회계	1,333,370,237	11,118,000	16,774,000	△5,656,000	1,344,488,237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259,912,647	7,400,000	7,400,000	-	267,312,647
주택사업특별회계	1,565,721,730	2,900,000	2,900,000	-	1,568,621,730
도시개발특별회계	1,179,424,859	95,701,647	95,701,647	-	1,275,126,506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096,258,338	-	-	-	1,096,258,338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28,338,661	-	-	-	28,338,661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	-	-	822,094,77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657,585,137	122,700,000	122,700,000	-	1,780,285,137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	-	-	-	82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837,585,137	122,700,000	122,700,000	-	960,285,137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31,742,874,289	71,190,943	716,950,286	△645,759,343	31,814,065,232
일반회계	22,673,130,007	△206,678,704	305,349,639	△512,028,343	22,466,451,303
기타특별회계	9,069,744,282	277,869,647	411,600,647	△133,731,000	9,347,613,92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127,037,897	38,050,000	64,550,000	△26,500,000	1,165,087,897
교통사업특별회계	1,333,370,237	11,118,000	27,492,000	△16,374,000	1,344,488,23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59,912,647	7,400,000	7,400,000	-	267,312,647
주택사업특별회계	1,565,721,730	2,900,000	5,750,000	△2,850,000	1,568,621,730
도시개발특별회계	1,179,424,859	95,701,647	137,977,647	△42,276,000	1,275,126,50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96,258,338	-	-	-	1,096,258,338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8,338,661	-	-	-	28,338,661
소방안전특별회계	822,094,776	-	797,000	△797,000	822,094,776
공기업특별회계	1,657,585,137	122,700,000	167,634,000	△44,934,000	1,780,285,137
수도사업 특별회계	820,000,000	-	6,154,000	△6,154,000	820,000,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37,585,137	122,700,000	161,480,000	△38,780,000	960,285,1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26,223,168	782,805	27,005,973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서울시의회의장기 촉구대회	-	60,000	60,00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서울시의장배 축구대회 지원	-	60,000	60,00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392,780	△35,000	357,78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16,790	△40,000	76,79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국내 의정활동 교류(기타 의정활동 관련 공무출장)	330,340	△100,000	230,34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09,000	△25,000	84,00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회의록 발간	33,330	5,100	38,43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51,950	15,000	166,95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회운영 지원(의원상해부담금)	931,590	34,000	965,59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113,160	3,200	116,36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정활동수행비(의원역량개발)	8,681,454	100,000	8,781,454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회 청사 유지관리	1,142,667	△28,960	1,113,707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정 정보화 지원	1,424,983	1,079,621	2,504,604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U-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9,736	△2,376	17,36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국내 의정활동 교류(국내 우호도시 방문기 념품)	330,340	15,000	345,34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94,350	△3,300	91,050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기본경비(파복비)	1,392,755	10,000	1,402,755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의정 정보화 지원(ONE-STOP 네트워크 2단 계)	1,424,983	△364,480	1,060,5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9,070,701,552	△4,793,092	9,065,908,46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성북구 공유아파트 특화사업 공간조성	1,415,298	100,000	1,515,298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955,893	△80,000	875,893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557,038	△78,038	479,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마을활력소(창2동 시골벽적)	2,053,840	500,000	2,55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마을활력소(창5동 주민센터)	2,053,840	200,000	2,25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구 역촌가압장)	2,053,840	200,000	2,25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조성	-	1,500,000	1,50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송파마을활력소 조성	2,053,840	1,100,000	3,15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	2,053,840	20,000	2,07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이육사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	1,400,000	1,40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성미산 산골 음악회(시민참여)	13,000	△13,000	-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염리동 소금축제(시민참여)	20,000	△20,000	-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알콩달콩 마실축제	10,000	△10,000	-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지역협력 활성화	3,153,916	△50,940	3,102,976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2,053,840	200,000	2,253,84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청년활동 공간 청춘벨딩 운영	-	220,000	22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서울시와 함께하는 청년 응원 문화프로젝트	-	250,000	25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우리 이렇게 먹고산다 프로젝트 추진(시민참여)(민간위탁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250,000	-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청년 인생설계 학교	500,000	△200,000	30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서울 청년활동 보장(청년정책 홍보 등)	21,090,000	△80,000	21,01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3,195,657	200,000	3,395,657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운영	3,399,000	100,000	3,499,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강서구 인권교육 사업	-	60,000	60,000
서울혁신기획관	일반회계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 운영	526,900	△526,9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비상기획관	일반회계	안전교육센터 건립	-	100,000	100,000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서울시 앱 4.0 전략 로드맵	66,909	600,000	666,909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정보정책총괄자문가 운영	51,571	△51,571	-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841,717	△100,000	741,717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기본경비 삭감(정보기획담당관 국내여비)	267,975	△44,688	223,287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사물인터넷 IoT센터 민간위탁금 삭감	4,922,000	△300,000	4,622,000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디지털시민 시장실 구축	843,078	△200,000	643,078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항공사진 고도화 사업	240,664	165,000	405,664
정보기획관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기본경비(국내여비) 감액	319,130	△20,000	299,130
행정국	일반회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	250,000	250,000
행정국	일반회계	행정장비구매	654,582	200,000	854,582
행정국	일반회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6,104,529	100,000	16,204,529
행정국	일반회계	퇴직공무원 활용 민원상담관 운영	59,500	210,000	269,500
행정국	일반회계	총무과 기본경비(국내여비 감액)	2,787,782	△20,000	2,767,782
행정국	일반회계	한성대 민원행정서비스 인력양성 예산	4,169,398	75,000	4,244,398
행정국	일반회계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비 증액	2,454,453	120,000	2,574,453
행정국	일반회계	명사초청 특강 등 운영	30,000	△10,000	20,000
행정국	일반회계	한자녀 더 갖기 행사 지원(서울시 새마을회)	255,000	290,000	545,000
행정국	일반회계	제주 4.3 70주년 서울시 문화사업	-	290,000	290,000
행정국	일반회계	서울시 자율방범 연합회 지원	-	100,000	100,000
행정국	일반회계	마포구 성산2동 자치회관 전등 교체(시민참여)	4,000	△4,000	-
행정국	일반회계	동행프로젝트 추진	3,366,869	1,903,143	5,270,012
행정국	일반회계	서울시 새마을회 지원	255,000	125,000	380,000
행정국	일반회계	6.10 민주항쟁 기념 생활민주주의 공모사업	-	200,000	200,000
행정국	일반회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1,055,454	200,000	1,255,45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행정국	일반회계	속초수련원 시설개선	396,800	200,000	596,800
행정국	일반회계	속초수련원 기본경비(공공운영비) 감액	74,899	△5,000	69,899
재무국	일반회계	국내여비	1,576,156	△30,000	1,546,156
재무국	일반회계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강화 포상금 감액	2,419,432	△200,000	2,219,432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학교시설개방지원 예산	-	3,000,000	3,00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	800,000	80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초등학교 스쿨버스(5개교) 지원	3,303,440	340,000	3,643,44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686,713	△686,713	-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 개선 지원(교육청 협력 사업)	330,000	1,900,000	2,23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구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6,040,000	3,960,000	10,00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8,890,000	2,200,000	11,09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동행프로젝트	1,903,143	△1,903,143	-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우리 학교 안전살피미(주민참여)	60,000	△60,000	-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51,025,189	△22,757,000	28,268,189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프로그램	-	250,000	25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신명실업학교 책걸상 교체 및 설비, 냉난방교체	70,000	30,000	10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시민참여)	250,000	△250,000	-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4,832,031	△153,747	4,678,284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관악캠프)	510,440	△126,313	384,127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관악캠프)	570,000	△71,250	498,75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관악캠프)	721,800	△176,000	545,8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서울전문대 천체 투영실 운영서버 교체 공사(광진청소년수련관)	18,406,353	250,000	18,656,353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증축 설계비	4,931,161	50,000	4,981,161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망우청소년 수련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4,931,161	140,000	5,071,161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마포 청소년 소셜벤처 직업체험 "청출어 JOB"	-	100,000	1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비	355,000	350,000	705,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중앙청소년수련관 헬스장 개선공사	4,931,161	127,000	5,058,161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18,406,353	105,000	18,511,353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6,605,528	327,000	6,932,528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1,734,502	18,068	1,752,57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광명근로복지관)	18,406,353	440,000	18,846,353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931,161	2,050,000	6,981,161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여름방학 특별진로 캠프	18,406,353	100,000	18,506,353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7,073,599	△2,100,000	14,973,599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친환경 식생활교육학교 지원	-	150,000	150,000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공공급식 구축 사업(시민참여)	300,000	△300,000	-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강진군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및 푸소체형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비	-	250,000	250,000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4,811,495	△2,000,000	2,811,495
감사위원회	일반회계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무관리비)	352,074	△17,271	334,803
감사위원회	일반회계	감찰장비 구입	48,876	17,271	66,147
민감사옹부즈만위원	일반회계	옹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시민참여)	30,000	△3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1,269,956,765	△131,608,698	1,138,348,06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874,292	△2,082,751	20,791,54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704,000	300,000	3,004,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66,500	50,000	116,5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및 권익보호	-	50,000	5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956,000	△350,000	2,606,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노동존중문화 확산	570,000	△260,000	31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3,150,000	△440,000	2,71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01,000	10,000	111,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70,000	45,000	115,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영리마을공동체 노후장비 교체사업	-	50,000	5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	600,000	600,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37,028	△150,000	4,787,028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540,700	150,000	690,70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반회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37,028	100,000	5,037,028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미래인 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00,280	△40,000	60,28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수변공간 관광활성화 연구용역(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	250,000	250,0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7,204,911	△700,000	56,504,911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시정시책연구용역	1,406,600	△50,000	1,356,6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서울연구원 출연	23,994,000	△300,000	23,694,0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57,204,911	1,837,000	59,041,911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민간위탁 회계감사	605,922	100,000	705,922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19,027	928,000	947,027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5,011,287	△50,000	4,961,287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번호사 운영 등	857,870	△50,000	807,87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3,000,000	△240,000	2,760,0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00,000	△900,000	100,0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82,113,379	14,711,211	196,824,59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88,672,400	△130,000,000	58,672,4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241,127,950	△57,812,950	183,315,000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77,570	△50,000	827,570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	-	700,000	700,000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	-	36,950,000	36,950,000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도시개발)	859,279	2,164,647	3,023,926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 지원강화	2,170,000	500,000	2,67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상공회의소 지원강화	2,170,000	340,000	2,51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양말산업 소공인 환경개선	658,600	500,000	1,158,6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300,000	△4,300,000	50,0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가칭)로봇과학관건립	1,234,946	△1,040,000	194,946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형R&D지원	23,977,500	△1,977,500	22,0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사무관리비 감액)	539,120	△50,000	489,12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921,480	500,000	4,421,48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658,600	370,000	1,028,6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압구정 로데오상권 표지판 설치	284,800	200,000	484,8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강남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1,610,000	20,000	1,63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주민참여형 압구정 로데오상권 활성화	284,800	148,000	432,8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마천중앙시장 워닝 설치비	15,083,004	200,000	15,283,004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00,000	543,000	3,543,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확대조성	284,800	150,000	434,8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관악신사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622,000	20,000	642,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990,000	480,000	1,47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298,764	△26,855	3,271,909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305,144	△200,000	1,105,144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3,000,000	1,800,000	4,8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170,000	30,000	2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망원 월드컵시장 화장실 보수	305,000	29,000	334,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120,000	300,000	1,42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2,700,000	200,000	2,9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전통시장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610,000	△200,000	1,41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무관리비)	1,120,000	△10,000	1,11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안암동 참살이길 골목상권 활성화	284,800	210,000	494,8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115,000	△10,000	105,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초단편영화제지원	5,699,900	200,000	5,899,9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개최	5,699,900	250,000	5,949,9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	300,000	3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 패션왕-패션 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시민참여)	100,000	△100,000	-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474,700	△650,000	1,824,7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패션산업 기반확충	1,670,000	280,000	1,95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30,000	150,000	28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305,000	600,000	905,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신촌 박스케어 건립사업	-	860,000	86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디지털대장간 운영	539,000	△120,000	419,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조성(시민참여)	200,000	△200,000	-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창업카페 강동점 운영(시민참여)	100,000	△100,000	-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다문화학생교육지원사업(몽골학교)	91,200	100,000	191,2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412,200	25,500	437,7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핀테크 시범사업	721,300	100,000	821,3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09,500	100,000	509,5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송파구 도심형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	4,052,365	150,000	4,202,365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강서구 영구임대단지 힐링숲사업	4,052,365	50,000	4,102,365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상자텃밭 보급	4,052,365	200,000	4,252,365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청년 귀농, 귀촌 지원 프로젝트(시민참여)	250,000	△250,000	-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반려식물 보급	4,052,365	100,000	4,152,365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과학관 대표전시물 추가 설치	1,052,000	500,000	1,552,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200,000	1,500,000	1,700,000
경제진흥본부	일반회계	서울과학관 이동형천체투명관 설치	200,000	100,000	3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환경수자원위원회			1,604,619,503	116,600,616	1,721,220,119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다국어정책 소개자료 및 영상제작(환경에너지 관련))	512,625	50,000	562,625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280,600	20,000	300,6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115,653,525	△19,100,000	96,553,525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 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시민참여)	1,000,000	△1,000,000	-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그린카 보급	53,770,000	14,494,000	68,264,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530,000	1,335,000	7,865,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54,231	170,000	424,231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조성(난지캠핑장)	786,800	300,000	1,086,8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송파구 체육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7,855,105	200,000	8,055,105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3,186,422	△8,925	3,177,497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 이전	-	500,000	500,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재활용 분리수거기 네프로 설치 및 분리수거 학교 운영(시민참여)	30,000	△30,000	-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노원)	63,738,195	100,000	63,838,195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소음측정장비 구매(서울소음정보센터 난청 측정실 및 프로그램 운영)	300,000	100,000	400,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음식물쓰레기 RFID 대형감량기 설치(시민참여)	600,000	△600,000	-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음식물처리 시설 설치)	363,700	84,000	447,7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321,000	74,000	395,00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음식물쓰레기 RFID 대형감량기 설치	1,502,030	300,000	1,802,03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807,950	90,000	897,950
기후환경본부	일반회계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_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시민참여)	700,000	△400,000	3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숲속 어르신힐링센터 조성사업	128,909	100,000	228,909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송파구 오금공원 조명 등 교체	2,300,000	200,000	2,5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공원 내 취약지역 CCTV 설치(불광근린공원 등 3개소)	2,300,000	54,000	2,354,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어린이대공원시민참여 페스티벌(민간행사비)	12,172,283	150,000	12,322,28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12,172,283	500,000	12,672,283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12,172,283	360,000	12,532,283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경관향상 및 그늘수목 식재사업	3,138,638	400,000	3,538,638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돌산체육공원 야간조명 교체 사업	2,300,000	100,000	2,4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운영	1,361,000	△300,000	1,06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시공원 공원등 정비사업(봉화산 및 용마산)	2,300,000	400,000	2,7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관악산공원 등)	2,300,000	365,000	2,665,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상도근린공원)	2,300,000	190,000	2,49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어린이대공원 동화축제	12,172,283	200,000	12,372,283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증액	274,000	400,000	674,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관악산입구 조각 테마공원 조성	267,975	300,000	567,97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강서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	-	1,000,000	1,0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선우지구)	-	2,100,000	2,1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강북구 삼양초)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강북구 미양고)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독산로 가로수길 조성	7,354,100	220,000	7,57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금천한울예술정보학교 에코스쿨 조성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목운초, 월촌초, 신남중)	2,760,000	450,000	3,2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영동대교남단 교통성 소나무숲 조성사업	7,354,100	500,000	7,8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자투리땅 녹지량 확충사업(대치동 2 외 1개소)	151,000	89,000	24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정원 조성 (남현동 1130-1 일대)	818,000	800,000	1,618,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7,354,100	200,000	7,5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물 이용 친수공간 재정비(용산구 원효로 4가 113-59 외 1필지)	905,000	700,000	1,605,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서대문구 홍제동 277-84)	1,002,205	500,000	1,502,20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녹번119 안전센터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	-	200,000	2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능동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7,354,100	28,000	7,382,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장평중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경희여고)	2,760,000	60,000	2,82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정원 조성(신설동역 8번 출구)	818,000	100,000	918,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제기로 가로수 바뀌심기 사업	7,354,100	450,000	7,80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변 녹지량 확충(장안동)	7,354,100	300,000	7,6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변 녹지량 확충(용두동)	7,354,100	50,000	7,40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우장초, 신정여상, 화일초, 화원중, 마포고, 등촌고 6개 학교)	2,760,000	900,000	3,6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열린녹지 조성사업(등촌 동성아파트)	277,000	100,000	377,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상암초 에코스쿨 조성사업	2,760,000	130,000	2,89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리봉동 축백나무 보호수 정자마당 진입로 토지보상 및 정비	450,000	500,000	95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1,258,384	100,000	1,358,38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노원구 청백4단지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277,000	112,000	389,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 바뀌심기(우신초~강남성심병원)	7,354,100	300,000	7,6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서울일대)	450,000	150,000	6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황화현상)	7,354,100	340,000	7,69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신구중 에코스쿨 조성사업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상일여고 외 7개)	2,760,000	450,000	3,2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마포구 옥상텃밭 설치사업	1,258,384	100,000	1,358,38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대도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도곡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강서구 방화3동 시냇가푸른숲교회 6층 옥상 녹화사업	1,258,384	40,000	1,298,38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오류1동 텃밭공영주차장 부지내 쉼터 및 녹지확충	151,000	150,000	30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방학사계광장 재정비	7,354,100	1,000,000	8,3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성동구 경수중학교 에코스쿨 지원	2,760,000	150,000	2,91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진관초 에코스쿨	2,760,000	145,000	2,905,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노후마을보수정비사업(송파동 190)	910,000	200,000	1,1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선유로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	7,354,100	500,000	7,8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2018년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여의도) 3개소	7,354,100	750,000	8,10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생활권 녹지확충(암사동 서원마을 입구)	7,354,100	240,000	7,59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성동구 금호동3가 1583외 2필지)	905,000	360,000	1,265,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골목만들기사업(마장동, 용담동)	301,000	200,000	50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사근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신현고 외 4개)	2,760,000	450,000	3,2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송파대로 시설녹지 환경개선)	7,354,100	350,000	7,70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석촌지하차도 상부 녹지대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7,354,100	700,000	8,0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계절 꽃길 조성(송파구 문정지구 법조단지 일대)	951,460	200,000	1,151,46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겨울철 가로수 가로치기 송파대로)	1,740,000	100,000	1,84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녹색자금지원사업(나농숲·나농길 조성)	-	320,000	32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에코스쿨 조성(도시소생태계 조성)	2,760,000	120,000	2,8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석계역 일대 아동친화 도시환경 개선사업	7,354,100	1,000,000	8,3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창원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자운고	2,760,000	80,000	2,84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장월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난곡초등학교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계절 꽃길 조성(관악구)	951,460	170,000	1,121,46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노원구))	301,000	200,000	50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인왕초	2,760,000	50,000	2,8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송미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계절 꽃길 조성(성동구)	951,460	230,000	1,181,46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성원중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동네숲 골목길 녹지공간 조성(누상동 등)	301,000	100,000	40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문래한신 외2개소)	277,000	290,000	567,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도림천로 방음벽)	1,002,205	200,000	1,202,20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영등포로 삼환아파트 등 4개소)	7,354,100	300,000	7,6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영원중, 양화중	2,760,000	300,000	3,0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도신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7,354,100	200,000	7,5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동양중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마산로 가로수 정비사업	7,354,100	200,000	7,5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가로수 동호로 보행녹지 조성사업	7,354,100	500,000	7,85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신길로 가로수 바꿔심기	7,354,100	250,000	7,604,1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금호여중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은천초등학교(봉천동)	1,002,205	30,000	1,032,20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장평초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길음중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동구마케팅고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정원박람회	1,146,500	200,000	1,346,5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영풍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문정고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거원초	2,760,000	150,000	2,91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마천초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송례초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에코스쿨 조성사업 상도초	2,760,000	100,000	2,86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갈딱고개)	3,003,000	400,000	3,4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랑천 제방 장미터널 개선사업	4,300,000	500,000	4,8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온수도시자연공원(지양산) 데크로드 조성	3,003,000	1,500,000	4,5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달터근린공원녹지 연결로 조성사업	5,924,000	150,000	6,074,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우이천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177,575	300,000	477,57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홍제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300,000	100,000	4,4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근교산 등산로정비 인왕산 등산로(개미마 을뒤~기차바위)	3,003,000	250,000	3,25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300,000	300,000	4,6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랑둘레길 사가정공원~유아숲 연장	3,003,000	2,000,000	5,0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염창산 진입로 조성	3,003,000	800,000	3,8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안산등산로 정비사업	3,003,000	300,000	3,3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불암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3,003,000	700,000	3,7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장지천 생태복원사업	4,300,000	300,000	4,6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관악산 꽃길 조성	822,688	150,000	972,688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숲가꾸기 사업	947,210	500,000	1,447,21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랑구 중랑천 그라스원 조성사업	4,300,000	500,000	4,8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구로 안양천변 명소화사업	4,300,000	700,000	5,0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북한산 등산로 정비사업(근교산 등산로 정 비 삼하운수 11번종점~북한산자락길)	3,003,000	250,000	3,25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용왕산 근린공원 시공원 상록수 식재 및 등산로 정비	3,003,000	300,000	3,3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송정제방)	4,300,000	300,000	4,6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북악산 생태탐방로 조성	900,000	200,000	1,10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산불방지대책(경상)	15,800	266,890	282,69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산불방지대책(자본)	800	1,026,724	1,027,524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갈산 근린공원 산림정비	822,688	300,000	1,122,688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무장애숲길조성)	3,003,000	500,000	3,5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근교산 등산로 정비(관악산 일대)	3,003,000	500,000	3,5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둘레길 트리하우스 설치	900,000	250,000	1,15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근교산 등산로 정비 (동작구 흑석동 산88-68일대)	3,003,000	245,000	3,248,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봉화산 둘레길 정비사업	3,003,000	200,000	3,203,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초구 영곡동 사방시설물 설치대상 토지 매입비	5,622,300	700,000	6,322,3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2018년 예방 사방사업(녹번동 산1-1등)	3,645,297	103,000	3,748,297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북한산 위험시설물(절개지) 정비 공사(수유동 127-1)	3,645,297	400,000	4,045,297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사방사업신규조성	3,645,297	1,550,051	5,195,348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사방사업평가, 점검, 안전진단	61,034	31,376	92,41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로 7017 운영관리(시설비)	4,443,275	△167,500	4,275,77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4,443,275	50,000	4,493,275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보라매공원 잔디구장 샤워장 설치	735,812	200,000	935,81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숲 게이트볼 코트 증설	333,000	68,000	401,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보라매공원(테마 물놀이터 조성)	735,812	400,000	1,135,81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보라매공원(동문 쉼터 주변 정비)	735,812	300,000	1,035,81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보라매공원(진출입로 확충)	735,812	150,000	885,81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북서울 꿈의숲 어린이놀이터 정비(조합놀이대, 바닥포장등 교체정비)	2,629,252	400,000	3,029,25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북서울 꿈의숲 목재데크정비(계단, 산책로 정비)	2,629,252	450,000	3,079,25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용산가족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2,680,000	300,000	2,9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용산가족공원파크 골프퍼팅 연습장 조성	2,680,000	200,000	2,8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중랑캠핑숲 노후시설 정비	2,680,000	300,000	2,9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북서울꿈의숲 및 창포원 유지관리(천인의의자 정비)	2,629,252	120,000	2,749,252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현장근로자 대기실 정비)	1,280,000	600,000	1,8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경의선숲길 사랑방 운영	797,886	30,000	827,886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2018 Seoul 친환경 노을공원 축제	5,764,921	250,000	6,014,921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하늘공원진입로 단풍길 조성 사업	1,280,000	300,000	1,580,000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서울 호수공원 시설개선 사업	5,764,921	150,000	5,914,9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서울대공원 공원홍보기능 강화(온오프라인)	282,900	130,000	412,9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만수천 약수터 주변 소규모 쉼터 정비	22,301,267	150,000	22,4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일근린공원 내 다목적 건강마당 조성사업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화산 등산로 먼지털이대 2곳 설치	22,301,267	40,000	22,34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근린공원 정비사업 봉화산근린공원	22,301,267	700,000	23,0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봉화산 및 용마산) 등 정비사업	22,301,267	400,000	22,7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가정공원 정비사업	22,301,267	800,000	23,1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정릉4동 외환은행 안쪽길 공원조성	-	2,000,000	2,0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도곡근린공원 노후시설정비 사업	22,301,267	200,000	22,5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산현충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22,301,267	400,000	22,7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유지보수사업(효창공원) 시설비	22,301,267	70,000	22,37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아차산공원 소나무단지 정비사업	22,301,267	150,000	22,4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아차산공원 구철초단지 조성사업	22,301,267	200,000	22,5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녹지쉼터 조성(강북구)	-	600,000	6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영등포공원 잔디광장 유지관리	22,301,267	50,000	22,3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관악산, 일상별공원 재정비사업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노량진 근린공원)	22,301,267	519,000	22,820,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난지천축구장 재정비사업(잔디교체 및 배수구)	22,301,267	1,100,000	23,4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난지천축구장 야간조명 개선 사업	22,301,267	120,000	22,42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성산근린공원 휴식공간 조성	22,301,267	50,000	22,3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산림내 방치 배드민턴장 녹지복원(안산 등 5개소)	22,301,267	100,000	22,4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대문 독립공원 보수정비 사업	22,301,267	675,000	22,976,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2018년 시공원 보수정비사업(궁동근린공원 등 5개소)	22,301,267	450,000	22,7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불암산종합스튜디오 축구장) 보수정비 사업	22,301,267	1,000,000	23,3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불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25개 구)	22,301,267	1,000,000	23,301,26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장지근린공원 내 족구장 설치	22,301,267	150,000	22,4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운산족구장 페인트	22,301,267	20,000	22,32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계남근린공원 노후헨스 정비공사	22,301,267	200,000	22,5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답십리산 주변 편의시설 개선	22,301,267	1,000,000	23,3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오동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	22,301,267	380,000	22,68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장미와 어우러진 공원조성사업	22,301,267	350,000	22,6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마장동 770-9일대)	-	500,000	5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락산 당고개지구 물놀이장 설치 등 시설 보수 정비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	-	6,964,000	6,964,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관악산 신림계곡지구 호수정비사업)	22,301,267	350,000	22,6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도근린공원 등 등산로 정비)	22,301,267	250,000	22,55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22,301,267	280,000	22,58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관악산 낙성대지구)	22,301,267	300,000	22,6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남산 및 산하공원 유지관리 (훈련원공원)	22,301,267	400,000	22,7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권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대현산 장미원 조성 (응봉근린공원)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영등포구 문래동 5개 22-1일대	-	300,000	3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상도근린공원)	22,301,267	100,000	22,4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상계동 공영주차장 수목식재, 휴게공간, 옥상(상계동 441-3)	-	200,000	2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원 관리용 동력 운반차 구입	22,301,267	222,000	22,523,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보수정비(오동근린공원)	22,301,267	600,000	22,9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보수정비 개운산근린공원	22,301,267	500,000	22,801,267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독산동 산118-6번지) 조성	2,130,000	466,000	2,596,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상일동 산19외 11필지)	4,341,202	1,600,000	5,941,202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화산근린공원(중량) 조성(목동 122-12)	7,024,376	800,000	7,824,37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 공원조성 온수도시자연공원(신월동 350-22)	29,288,911	950,000	30,238,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	29,288,911	724,000	30,012,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둘리쌍문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군부대 이적지 활용 등)	1,263,080	100,000	1,363,08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산근린공원(마곡동 산2-7번지) 조성	-	300,000	3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 공원조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도시농업공원, 신림동 산86-6일대)	29,288,911	1,277,000	30,565,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신림동 산 117번지)	29,288,911	621,000	29,909,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일동근린공원(강동)조성(상일동 산37번지)	4,341,202	3,000,000	7,341,202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개화근린공원(강서)조성(방화동 산142-9)	16,000	1,500,000	1,516,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상도근린공원(관악)조성(봉천동 113-49 일원)	-	500,000	5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	230,000	23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암사역사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	4,000,000	3,000,000	7,0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제산 근린공원(강서) 조성사업 (등촌동 산87)	-	2,500,000	2,5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제산 근린공원(강서)조성(화곡동 산5-3 외 5필지)	-	3,660,000	3,66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 공원조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산29 일대)	29,288,911	650,000	29,938,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수락골 전망대 쉼터)	-	2,200,000	2,2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화산근린공원(중랑)조성(중화동 산9-1)	7,024,376	1,856,000	8,880,376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쌍문근린공원(도봉)조성(쌍문동 산249)	1,263,080	2,400,000	3,663,08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초안산근린공원(도봉)조성(창동 산156-1)	6,372,448	1,000,000	7,372,448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 공원조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산26-2 일대)	29,288,911	1,500,000	30,788,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일동근린공원(강동)조성(상일동 산58)	4,341,202	1,900,000	6,241,202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조성(봉천동 산174-172)	2,130,000	400,000	2,53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네뒷산 공원 조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 산6-1)	29,288,911	2,000,000	31,288,911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충근린공원(동작)조성(동작동 산28-1)	-	306,000	306,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충근린공원(동작)조성(동작동 산16-12)	-	857,000	857,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진관근린공원(은평)조성(진관동 산92)	-	1,000,000	1,0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제산근린공원(강서)조성(화곡동 산22-91)	-	1,000,000	1,0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봉제산근린공원(강서)조성(화곡동 산22-4)	-	1,000,000	1,00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쌍문근린공원 조성 (방학동 산90-46)	1,263,080	1,100,000	2,363,08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독산 시설녹지 환경개선	550,000	300,000	85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진명여고 통학로변 노후 녹지 재정비	550,000	300,000	850,000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서시설녹지 내 오솔길 연장 조성사업	550,000	300,000	850,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본부 일방향 장비도입	1,613,543	1,754,000	3,367,543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광양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4,600,000	△1,700,000	2,900,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리수 품질확인제(기간제근로자 40명 추가 채용)	2,564,416	900,000	3,464,416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서울물연구원 청사 증축)	6,940,467	1,500,000	8,440,467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대형 상수도관 무단수 진단)	57,381,000	2,000,000	59,381,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장비 임대	1,700,000	△200,000	1,500,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1,500,000	△1,000,000	10,500,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병물 아리수 공급	1,713,956	△200,000	1,513,956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49,542,000	△1,000,000	48,542,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양사배출수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4,260,000	△1,000,000	3,260,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관 누수복구	34,005,448	△1,000,000	33,005,448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민간 옥외전광판 활용 한강공원 홍보	641,500	150,000	791,5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이촌한강공원 보광나들목 족구장 조성	4,080,033	150,000	4,230,033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관리(화장실 환경개선)	6,192,650	50,000	6,242,65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가양3동 한강나들목 쉼터 신축	3,910,000	200,000	4,110,0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서울시민 뉴시교육 사업	103,000	200,000	303,0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태양광 LED 도로 표지병(한강사업본부)	2,892,000	50,000	2,942,0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변 둔치 그라스원 조성사업	3,621,194	1,000,000	4,621,194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변 둔치 미루나무길 조성사업	1,951,900	800,000	2,751,9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892,000	150,000	3,042,0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둔치 및 화장실 청소(부상형 화장실 설치)	6,192,650	550,000	6,742,65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녹지시설 유지관리	3,621,194	100,000	3,721,194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보수·정비	763,000	87,000	850,0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61,500	100,000	161,500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한강몽땅 여름축제(한강 뗏목행사)	1,147,400	18,000	1,165,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2,723,777	32,586,231	845,310,008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1,979,200	△200,000	1,779,200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120다산콜재단 상담시스템 구축(자산취득비 감액)	21,774,415	△3,479,809	18,294,606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120다산콜재단 상담시스템 구축 및 상담원 헤드폰 교체(출연금 증액)	21,774,415	5,920,014	27,694,429
문화본부	일반회계	문화소외지역 등 마을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	384,000	400,000	784,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전통사찰 학도암 보수 및 정비사업	-	210,000	21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금선사 템플스테이 시설개보수비 및 조경사업	498,000	150,000	648,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1,347,000	144,000	1,491,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5,976,600	△3,350,000	42,626,6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2,566,000	△447,400	12,118,6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200,000	50,000	25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한국전통 불교문화 축제 개최	-	200,000	2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송파문화원 시설개보수	1,273,450	500,000	1,773,450
문화본부	일반회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273,450	105,000	1,378,450
문화본부	일반회계	마음톡톡, 예술톡톡	-	200,000	2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울연극 국제교류사업	455,000	100,000	555,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	500,000	5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3,230,000	4,075,000	7,305,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마을미디어 활성화	700,000	300,000	1,0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455,000	300,000	755,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연등축제 지원	500,000	300,000	8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	100,000	1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아동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	150,000	15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울장미공원 상징조형물 건립	741,250	200,000	941,25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북권(용산) 쇼룸 활성화	29,686,000	400,000	30,086,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문화본부	일반회계	깔깔거리 상징조형물 내 디지털 광고물 설치	741,250	80,000	821,250
문화본부	일반회계	범죄예방 디자인	925,900	300,000	1,225,9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중랑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 사업	29,686,000	100,000	29,786,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공공미술프로젝트	3,650,000	△650,000	3,0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서울놀이마당 운영(송파)	-	500,000	5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	200,000	2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전통사찰(도선사) 보수정비	1,160,000	650,000	1,81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도봉서원 복원사업 발굴조사	2,500,000	500,000	3,0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명성황후 재평가 국내외 자료 번역사업	-	100,000	1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우당 6형제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	30,000	3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성북동 화가 윤중식 기념미술관 조성 타당성 용역비	-	100,000	1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4,500	△104,500	-
문화본부	일반회계	근현대사기념관 운영(강북구)	-	270,000	27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노원문화예술회관 3극장 음향기능 개선 사업	-	245,000	245,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용역 사업	-	200,000	2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강동아트센터 리모델링	-	1,800,000	1,8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강동 문화복합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	200,000	2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역	-	100,000	100,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	2,306,000	△400,000	1,906,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배봉 숲속도서관 건립	-	235,000	235,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	-	892,000	892,000
문화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933,138	567,100	3,500,238
문화본부	일반회계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5,876,500	1,000,000	6,876,500
문화본부	일반회계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901,000	91,000	1,992,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1,400,000	70,000	1,47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운영	620,000	100,000	72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1,000	1,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체험	-	30,000	3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G밸리 산업관광	-	200,000	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지원	438,200	292,000	730,2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울 글로벌 마케팅	9,000,000	△900,000	8,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웨딩관광 활성화	9,000,000	200,000	9,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8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9,000,000	200,000	9,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택견공연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에어로빅 국제대회지원	14,090,985	250,000	14,34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검토지원	700,000	200,000	9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도농 장애인지도자 교류 연찬회	7,246,459	30,000	7,276,459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2회 한중청소년 스포츠교류	14,090,985	80,000	14,17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계당구대회 지원	14,090,985	250,000	14,34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00회 전국체전 상징물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서울특별시 선수단 경기력 향상 방안	700,000	1,200,000	1,9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 창단	14,562,564	700,000	15,262,564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증원(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7,246,459	1,372,212	8,618,671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7,246,459	300,000	7,546,459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향상 특별지원비	700,000	500,000	1,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7,246,459	120,000	7,366,459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ICG 하계 국제청소년체육대회 참가	14,090,985	70,000	14,16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8 서울 트라이애슬론 아시안컵 대회	14,090,985	250,000	14,34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울 크로스컨트리 국제 스키대회	14,090,985	150,000	14,240,98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김운용컵 국제태권도 대회	14,090,985	50,000	14,14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14,090,985	120,000	14,210,985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강북구 번3동 2단지 별리공원내)	-	300,000	3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오동근린공원 조성(강북구)	1,110,000	700,000	1,81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정릉동족구장, 돌산족구장, 종암족구장 등 성북구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정릉족구장 화장실 공사	-	30,000	3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제2양천체육공원 조성	1,110,000	1,000,000	2,11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반포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인조잔디 축구장)	1,110,000	1,400,000	2,51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신내3지구 주민복합시설 용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1,110,000	450,000	1,56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지원	1,110,000	1,450,000	2,56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구립)은평 통일로 체육센터 건립 용역비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강서 개화동 야구장 기능 개선	-	200,000	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전국독도사랑 배트민턴대회	3,116,000	55,000	3,171,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LED 조명등 교체	-	140,000	14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성산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	1,200,000	1,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미아8구역 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	-	500,000	5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안양천 축구장 조성	1,110,000	1,470,000	2,58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대문구 체육시설 개선	-	700,000	7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중랑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	230,000	23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VR융합 교육실(축구)설치	-	320,000	32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가양1동, 방화3동 족구장 보수공사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목동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비	-	200,000	2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예일여고 시설복합화 지원	960,000	298,000	1,258,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중랑구청 잔디운동장 조명타워 LED교체	-	100,000	1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신내3지구 중랑IC 하부 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	1,110,000	450,000	1,56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성북문화체육센터 타당성 용역비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일반	4,199,712	223,608	4,423,32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어르신	4,046,064	189,600	4,235,664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서울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150,588	△2,594	147,994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체육클럽활성화	3,116,000	30,000	3,146,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서울컵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	3,116,000	500,000	3,616,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신영동 족구장, 풋살장 등 확장개선	1,110,000	100,000	1,21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종로구 실외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개선	-	100,000	100,000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월곡구민운동장 보수 및 주차장 건설	1,110,000	1,000,000	2,110,000
시립미술관	일반회계	시립미술관 백남준기념관 조성 및 운영	100,000	△65,000	35,000
시립미술관	일반회계	SeMA 벙커(여의도 지하벙커) 운영	-	160,000	160,000
시립미술관	일반회계	예술가 길드 운영	-	90,000	90,000
교통방송	일반회계	교통방송 일반회계 전입금	32,837,636	△1,200,000	31,637,636
교통방송	교통사업특별회계	방송장비 유지관리	1,567,324	△200,000	1,367,3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8,683,715,862	△155,156,219	8,528,559,643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월세지원	4,479,156	24,000	4,503,156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4,479,156	100,890	4,580,046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시설비)	2,227,994	472,000	2,699,994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376,351	15,000	1,391,35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국비)	5,134,513	306,260	5,440,773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696,000	108,000	804,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237,908	104,000	341,908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자본)(국비)	1,720,104	205,418	1,925,522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성폭력 상담소 운영	2,207,576	59,038	2,266,614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11,570,200	△472,000	11,098,2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4,414,485	△100,000	4,314,485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일본군 위안부 건강관리 지원비	671,000	30,000	701,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671,000	30,000	701,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4,414,485	1,220,000	5,634,485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010,361	100,000	7,110,36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7,613,000	△500,000	7,113,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705,000	△100,000	605,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718,000	△658,000	6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010,361	△971,600	6,038,76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1,153,741	470,000	1,623,74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어린이집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36,415,746	1,959,200	138,374,946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영유아보육료(보조)	617,143,214	7,843,433	624,986,647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3,042,937	60,000	3,102,937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민간어린이집 교사 중식비	140,940,298	2,250,000	143,190,29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집조리원 처우개선	140,940,298	1,412,000	142,352,298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보육교사 연수비	-	780,000	78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지원	3,560,258	430,000	3,990,258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사업타당성 기본용역 시행	3,532,021	90,000	3,622,02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40,940,298	10,684,848	151,625,146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0,940,298	△270,000	140,670,298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7,980,000	△230,000	137,75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2,100,300	△1,004,400	1,095,9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신대방1동)	4,733,309	350,000	5,083,309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어린이 안전교육관 아동안전 체험교실 34인승 버스구입	499,176	230,550	729,726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3,339,281	164,700	3,503,98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414,240	27,500	441,74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아이돌보미사업운영	21,484,782	1,127,123	22,611,905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요보호아동 그룹형 형태보호	5,244,591	750,000	5,994,591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	26,325,656	991,924	27,317,58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4,275,000	△150,000	4,125,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원	220,210,462	△77,199,830	143,010,632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733,309	620,000	5,353,309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	334,000	△14,000	32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7,000,000	△100,000	6,90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아동친화도시 추진	1,235,000	△10,000	1,225,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금천글로벌 통합복지센터 건립	-	100,000	10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가리봉동 관내 다문화 소통 플랫폼 구축사업	-	500,000	50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	100,000	10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사업	-	100,000	1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세계결혼문화 페스티벌	-	100,000	100,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492,000	△60,000	432,000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55,124	250,000	305,124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시 장례(선양)지원 예산 요청(장례지원행사)	34,959,450	70,000	35,029,450
복지본부	일반회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류보일러 및 열교환기 기능보강사업	2,634,916	200,000	2,834,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2,634,916	400,000	3,034,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중구 관내 유락 및 중림사회복지관 사업비	88,978,774	120,000	89,098,774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사회공헌활동 예산	34,959,450	50,000	35,009,450
복지본부	일반회계	복지박람회 개최	781,109	200,000	981,109
복지본부	일반회계	목동 복지관 차량구입비(노후차량교체)	2,634,916	25,000	2,659,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634,916	△42,000	2,592,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 긴급기능보강 사업비	2,634,916	100,000	2,734,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4,959,450	50,000	35,009,450
복지본부	일반회계	4.19혁명 세계 4대 민주혁명화 퍼레이드 및 학술대론회 개최	34,959,450	50,000	35,009,450
복지본부	일반회계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센터 운영	11,312,447	300,000	11,612,447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26,221,500	△150,000	26,071,500
복지본부	일반회계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1,781,534	△100,000	1,681,534
복지본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공단설립추진반 운영	543,000	△152,500	390,5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81,109	△30,000	751,109
복지본부	일반회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634,916	△100,000	2,534,916
복지본부	일반회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4,959,450	△600,000	34,359,450
복지본부	일반회계	나눔실천 토크콘서트	561,900	100,000	661,90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670,630,864	2,168,864	672,799,728
복지본부	일반회계	푸드마켓중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2,236,530	20,000	2,256,530
복지본부	일반회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87,011,063	△1,000,000	86,011,06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복지본부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선진견학)	1,958,820	200,000	2,158,820
복지본부	일반회계	수화노래 교육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3,067,313	50,000	3,117,313
복지본부	일반회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1,958,820	53,000	2,011,820
복지본부	일반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7,185,696	538,000	17,723,696
복지본부	일반회계	독거어르신 생활건강 관리 솔루션 사업 (IoT 기술 활용)	2,637,448	200,000	2,837,448
복지본부	일반회계	청암요양원 정문출입구 개선사업	6,663,540	30,000	6,693,540
복지본부	일반회계	고덕양로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6,663,540	230,000	6,893,54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22,436,100	△5,971,850	16,464,25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6,663,540	1,810	6,665,350
복지본부	일반회계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750,000	△400,000	35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1,672,839,582	△122,161,005	1,550,678,577
복지본부	일반회계	망우공원묘지이전	-	300,000	30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공공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458,782	268,200	13,726,982
복지본부	일반회계	어르신 생활 정보 매체 제공	1,958,820	200,000	2,158,820
복지본부	일반회계	노인의날 효행 행사	1,958,820	50,000	2,008,820
복지본부	일반회계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22,436,100	△500,000	21,936,100
복지본부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76,045,411	△3,000,000	173,045,411
복지본부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연합회장, 지회장)	11,364,324	186,600	11,550,924
복지본부	일반회계	성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	-	100,000	10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입구 확장 사업	4,465,747	1,000,000	5,465,747
복지본부	일반회계	시니어클럽 사업	1,508,246	204,000	1,712,246
복지본부	일반회계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34,601,126	96,000	34,697,126
복지본부	일반회계	2018 어르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797,224	250,000	1,047,224
복지본부	일반회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4,465,747	1,000,000	5,465,747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364,324	582,878	11,947,2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복지본부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797,224	60,000	857,224
복지본부	일반회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364,324	118,000	11,482,324
복지본부	일반회계	50+센터 확충 및 운영	3,981,233	100,000	4,081,233
복지본부	일반회계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증축)	4,465,747	100,000	4,565,747
복지본부	일반회계	광역어르신취업지원센터 운영	34,601,126	200,000	34,801,126
복지본부	일반회계	긴급 기능보강지원(노인복지관)	4,465,747	100,000	4,565,747
복지본부	일반회계	50+캠퍼스 확충	8,669,443	△1,500,000	7,169,443
복지본부	일반회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4,465,747	△198,458	4,267,289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베다니주간보호센터 긴급 차량지원	338,867	15,000	353,867
복지본부	일반회계	강서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강서구장애인 단체총연합회)	1,035,800	300,000	1,335,8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서비스	1,035,800	150,000	1,185,800
복지본부	일반회계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	700,000	70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40,000	50,000	9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성교육 사업	1,035,800	25,000	1,060,800
복지본부	일반회계	강동구 사랑센터의 집 등 미지원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94,900,552	200,000	95,100,552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신문 보급	-	100,000	10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 문화사업 활성화 사업	34,037,268	100,000	34,137,268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비	16,908,732	210,000	17,118,732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9,495,762	86,000	9,581,762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34,037,268	140,000	34,177,268
복지본부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설비	5,680,000	400,000	6,08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947,400	316,000	1,263,40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센터 운영비	34,037,268	283,000	34,320,268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309,536	△371,176	1,938,360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거주시설운영	94,900,552	△30,000	94,870,5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83,080	△32,895	50,185
복지본부	일반회계	시각장애인원격생활안전서비스	66,557	△56,565	9,992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8,591,900	60,000	8,651,9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보수 및 진동방지 공사	2,522,447	200,000	2,722,447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장애인소셜벤처사업(음성해설사업)	6,202,793	420,000	6,622,793
복지본부	일반회계	2018 서울특별시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청소년 명예촉진단 교육사업)	2,160,136	20,000	2,180,136
복지본부	일반회계	2018년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350,000	350,0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1,094,925	1,200,000	2,294,925
복지본부	일반회계	서울시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고등부 신설로 인한 교사4명 총원	421,249	100,000	521,249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중증장애인연금	123,766,551	△9,949,563	113,816,988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 지원급여	215,553,021	5,312,534	220,865,555
복지본부	일반회계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78,052,919	320,840	78,373,759
복지본부	일반회계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 서울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2,160,136	192,400	2,352,536
복지본부	일반회계	시립노성마비복지관 증축 설계비	78,052,919	100,000	78,152,919
복지본부	일반회계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차량 장비보강	2,522,447	31,210	2,553,657
복지본부	일반회계	중계복지타운 환경개선	2,522,447	140,000	2,662,447
복지본부	일반회계	농아인쉼터 조성 및 자치구 수화통역사 파견	6,885,328	403,000	7,288,328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관 운영	78,052,919	50,000	78,102,919
복지본부	일반회계	긴급 기능보강지원(장애인복지관)	2,522,447	100,000	2,622,447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297,300	△140,000	2,157,300
복지본부	일반회계	중증장애인연금	123,766,551	△140,000	123,626,551
복지본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15,553,021	△240,000	215,313,021
복지본부	일반회계	은평의마을 산책로 및 체육시설	609,750	100,000	709,75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희망키움통장 I	3,123,956	△164,306	2,959,650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희망키움통장 II	9,972,754	△1,861,046	8,111,7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자활근로사업 지원	53,838,400	△2,285,683	51,552,717
복지본부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지역자활센터 운영	7,065,840	△753,696	6,312,144
복지본부	일반회계	거리노숙인 보호	7,382,502	△11,200	7,371,302
복지본부	일반회계	노숙인 의료지원	6,989,254	25,651	7,014,905
복지본부	일반회계	거리노숙인 보호	7,382,502	35,240	7,417,742
복지본부	일반회계	성동구 비전트레이닝센터 에어컨 설치비	4,155,425	80,000	4,235,425
복지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추모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6,630,438	2,200,000	8,830,438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보건지소 확충지원	1,800,000	1,400,000	3,20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동부병원 공개공지 환경개선	8,359,401	100,000	8,459,401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2,175,773	200,000	2,375,773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서울의료원)	18,724,081	1,140,000	19,864,081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남병원 중환자실 확대운영	9,147,322	670,000	9,817,322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19,431,270	50,000	19,481,27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보건분야 전문인력 교육	349,089	20,000	369,089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6,436,926	△1,300,000	5,136,926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이프약국	485,816	100,000	585,816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안전망병원 운영	424,000	66,000	49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301네트워크	8,359,401	480,000	8,839,401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	533,000	533,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8,724,081	△700,000	18,024,081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시 공공건물 태양광 보급	106,400	△106,400	-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9,147,322	△600,000	8,547,322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마포구 모자건강센터 설치	-	150,000	15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금연도시 서울만들기	4,945,791	357,006	5,302,797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23,526,720	14,062,500	37,589,2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 사업(치매)	-	400,000	40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난임)	100,000	100,000	20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2018 전통음식 문화축제	-	200,000	20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965,000	130,000	4,095,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맛채형터 및 음식공동체 운영	355,046	200,000	555,046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2018년 국제마스터 셰프 요리대회	-	170,000	17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울 먹거리포털 구축 및 운영	115,496	△115,496	-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نس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35,760	△50,000	285,76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가양5동 임대아파트 단지 내 풀피리 공원 장애인 화장실 신축	180,000	100,000	28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화장실 생리대 수거함 설치비	-	100,000	10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결핵협회 차량지원	1,963,764	130,000	2,093,764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	768,900	200,000	968,9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동물매개활동 사업	-	450,000	450,000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축산물안전성검사-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국비)	350,812	101,500	452,312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국비확정내시]의약품안전성검사-검사장비 지원(국비)	-	333,333	333,333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어린이병원 영상의무기록 시스템	338,932	400,000	738,932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제공	3,839,544	△100,000	3,739,544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은평병원 24시간 진료실 현대화	1,705,585	650,000	2,355,585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705,585	△100,000	1,605,585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484,574	△50,000	1,434,57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3,720,607,444	144,369,800	3,864,977,244
기술심사담당관	일반회계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85,000	10,000	95,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안전마을 만들기	-	300,000	30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어린이안전교육관 VR 장비 구입 및 시설	705,968	50,000	755,968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유휴공간 재생프로젝트 사업	2,500,000	△2,000,000	50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가칭)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8,456,742	△1,700,000	6,756,742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	143,200	△53,200	9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영등포시장 지하상가(에스컬레이터)	1,570,000	800,000	2,37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정릉2동 508단지 계단정비	372,400	150,000	522,4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통일로~연수로)	500,000	50,000	55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사업	670,000	280,000	95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동화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450,000	90,000	54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소파로 노후난간 보수공사	500,000	204,000	704,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정비(강북구 인수봉로)	500,000	96,000	596,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보행자 안전 쉼스 설치(노원구 상계동 계상초등학교 앞)	500,000	90,000	590,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보행자 안전 쉼스 설치(이태원 재정관리단 교차로 주변)	500,000	75,000	575,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도로함몰 예방사업	6,423,000	△1,000,000	5,423,000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미아구름다리고가 비둘기 방지시설 설치(시민참여)	100,000	△100,000	-
안전총괄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8,900,000	△2,000,000	6,9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 만들기(양재대로 보도블럭 정비)	10,367,000	300,000	10,6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군자동 보도 지장물 정비(면목로 보행환경사업)	10,367,000	800,000	11,1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광나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367,000	500,000	10,8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장한로 노후보도정비 사업	10,367,000	300,000	10,6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무학로 노후·파손보도 개선사업	10,367,000	300,000	10,6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성산2동 고가 밑 양측 인도 조성 및 정비	10,367,000	200,000	10,567,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금화초~하나은행 보도정비 공사	10,367,000	250,000	10,61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행당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367,000	400,000	10,7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마장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367,000	600,000	10,9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도로복구 외 보도 정비	10,367,000	500,000	10,8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의도 뚝방길 보행로 조성공사	10,367,000	500,000	10,86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신림로 보도정비 공사	-	200,000	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양천원단 연결로(보도교) 신설	250,000	700,000	9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신동아아파트사거리~우이동광장 간 도로확 장공사(방학3동)	100,000	50,000	1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구의사거리 환경개선 사업(교차로 구조개 선)	-	200,000	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당로 (구) 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 장	11,000,000	3,000,000	14,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상도터널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	100,000	1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금호로 확장사업	1,000,000	300,000	1,3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	-	200,000	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성북동길 도로확장 사업	-	2,300,000	2,3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문정지구-SRT 수서역간 보행교 건설 및 녹 지축 연결 타당성 조사	-	100,000	1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4,350,000	1,000,000	5,3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21,564,000	1,500,000	23,064,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림로 확장	200,000	3,000,000	3,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봉화산길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비	-	100,000	1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900,000	100,000	5,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5,000,000	△5,650,000	39,3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월드컵 대교 건설	52,000,000	△2,000,000	50,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700,000	△500,000	4,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남부순환로(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3,750,000	△500,000	3,2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능인종합복지관 앞 양재대로 상의 육교 엘 리베이터 설치	2,600,000	700,000	3,3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변북로 청담대교 주변 방음시설 정비	700,000	350,000	1,05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영등포역 횡단보도 육교 보행환경 개선	2,600,000	1,000,000	3,6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LED 도로표지판 교체사업	160,000	800,000	96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림천1복개 내진성능개선공사	87,000	500,000	587,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난곡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	1,000,000	1,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변북로 노후 조명시설 개선	600,000	400,000	1,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대방천복개 보수	540,000	60,000	6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정릉, 홍지문터널 성능개선 및 경관개선공사	-	500,000	5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림천복개(좌안) 내진성능개선	3,300,000	△1,000,000	2,3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 정비	7,750,000	△750,000	7,0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북부간선고가교 교면포장 정비	1,250,000	△50,000	1,2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청담대교 보수	1,680,000	△200,000	1,48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성산2동 교각 환경개선 프로젝트(도시공원)	-	500,000	500,000
안전총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7,998,750	△2,000,000	5,998,75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621,600	60,000	5,681,6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514,100	△30,000	484,1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시흥, 독산 빗물펌프장 노후시설정비 및 영상설비 개량	13,280,000	60,000	13,34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안양천 주민친화형, 생태친화형 하천 조성	-	250,000	2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안양천 세월교(하안교) 및 경사로 보수보강	190,000	280,000	47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목동천변 제방보수 정비공사	-	1,000,000	1,0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정릉천 복개구간 복원화 기본계획 용역비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안양천 좌안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00,000	600,000	7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서초구 여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450,000	4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방학천 모래말다리 재가설 외 1개소 실시 설계 용역	-	150,000	1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불광천 증산역 인근 인도교 설치	-	500,000	5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불광천산책로 조성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불광천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	1,000,000	1,0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중랑천 둔치 체조교실 포장 정비	-	400,000	4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안양천 노후시설물 보수 공사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300,000	300,000	6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대방천 복개확장(신설암거)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홍제천 수변무대 관람석 그늘막 설치 사업	-	200,000	2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대림3유수지 기본실시 설계비	-	350,000	3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성북천 산책로 노후시설 정비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설비 개량사업	3,200,000	418,000	3,618,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대림3, 도림2, 양평2 펌프장 원격제어설비	3,200,000	430,000	3,63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봉천천 복원 계획변경 용역	-	150,000	1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중랑천 진입 보도육교 설치공사	1,500,000	1,300,000	2,8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도봉1천 도봉교~무수교 간 보행데크 설치	-	950,000	9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용답역 육감문 나들목 정비	-	150,000	15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성내천 둔촌교-청룡교 간 저수호안 정비	300,000	500,000	8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	1,000,000	1,600,000	2,6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감이천 산책로 신설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일반회계	빗물펌프장 노후펌프교체(오금1)	13,280,000	1,600,000	14,88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곡동 62-19-72-59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차산로 건대병원 앞 하수박수 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	600,000	200,000	8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곡 빗물펌프장 배수분구 설계비	-	100,000	1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기동 289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	500,000	5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동 465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	930,000	93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동 335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동 349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군자동 130-26~145-50 사각형거 보수보강	300,000	2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용산구 독서당길 103~ 대사관로34길, 40구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	880,000	88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성북구 석관동 255-10~ 134-2 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	2,000,000	2,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답십리 241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500,000	1,000,000	1,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화랑로33길 14~35길 13 사각형거 보수보강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리랑로 18길27~정릉로 38다4길 구간 외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화곡로 63길 109 일대 하수관로 정비	-	1,000,000	1,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홍익동 122-4 주변 외 9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	1,000,000	1,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87,200,000	39,100,000	126,3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7,500,000	△1,650,000	5,85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방이시장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	-	400,000	4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잠실새내역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500,000	200,000	7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망우동 우림시장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1,200,000	1,000,000	2,2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농동 582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	700,000	7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의도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	2,000,000	2,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성북구 북악산로 825-36~정릉로 38가길 26 구간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돌곶이로 28길 39~화양로 287구간 사각형거 보수보강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월곡동 37-18~226-3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	220,000	22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광로 139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	300,000	3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동 102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	600,000	6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일초등학교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	2,000,000	2,0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초구 강남대로 190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	1,000,000	1,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오패산로3길 164~성북트리즈빌딩 사각형거 보수보강	-	1,200,000	1,2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초트라펠리스~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노후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동 21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600,000	△6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농동 466-9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800,000	△8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문동 176-14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600,000	△6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화랑로 283 ~ 화랑로 304간 사각형거 보수보강	450,000	△45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강남대로503~서운로21길2 사각형거 보수보강	700,000	△300,000	4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방배로82~사평대로12 사각형거 보수보강	700,000	△300,000	4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매봉역~대치역사거리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900,000	△4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문동 209-3 주변 하수관로 개량	100,000	△1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봉동 562-41~563-18 주변 원형관로 보수	200,000	△2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방화대로 21길 95 주변 원형관로 보수	500,000	△5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당동 1009-1 ~ 1030-10 일대 원형관로 보수	300,000	△300,000	-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창동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000	△2,000,000	3,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월3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000,000	△1,000,000	7,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화곡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9,000,000	△1,000,000	8,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화곡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000	△2,000,000	3,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가리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3,500,000	△2,000,000	1,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유역경계조정)	12,150,000	△4,150,000	8,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10,000,000	△2,000,000	8,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빗물 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	3,000,000	△1,000,000	2,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및 정비	7,000,000	△1,830,000	5,17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서남물재생센터 내 탁구장 환경개선	76,330,178	150,000	76,480,178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기탈수기 시범사업	-	1,500,000	1,5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20,018,000	19,000,000	39,018,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20,080,000	18,000,000	38,08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16,000,000	16,600,000	32,6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25,000,000	30,000,000	55,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센터 DB 및 도면관리 시스템 개발	-	500,000	5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비점축식슬러지계면측정장치	76,330,178	300,000	76,630,178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비점축식슬러지계면측정장치	37,712,401	300,000	38,012,401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1처리장침사지침사인양기교체공사	76,330,178	1,500,000	77,830,178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탄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형거 물막이 공사 및 보수보강	37,712,401	1,000,000	38,712,401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차집관거 유지보수	76,330,178	2,000,000	78,330,178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20,018,000	△3,000,000	17,018,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20,080,000	△4,800,000	15,28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16,000,000	△3,000,000	13,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25,000,000	△3,000,000	22,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차집관로 성능개선	4,000,000	△1,000,000	3,00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 비점축식슬러지계면측정장치	3,380,000	100,000	3,480,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 중량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형거 물막이 공사 및 수보강	11,403,926	4,900,000	16,303,926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량물재생센터 오프처리 유지보수 - 제3처리장소화조개량(형기성2단소화조)	2,252,000	500,000	2,752,000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1,403,926	△800,000	10,603,926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 난지분뇨처리장 유지보수	6,346,175	1,500,000	7,846,175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지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 차집관거 유지보수	6,346,175	3,000,000	9,346,175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송파소방서 환경개선	8,175,067	50,000	8,225,067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행정타운 건립(시설비)	39,135,000	△180,000	38,955,000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	2,002,000	△617,000	1,385,000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	-	60,000	6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의용소방대원 안보체험교육 지원	2,523,924	123,000	2,646,924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2,523,924	164,000	2,687,924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차량 성능개선(화학차 5대, 펌프차 16대)	13,395,000	150,000	13,545,000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특별회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407,920	250,000	657,9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3,234,833,407	△5,847,000	3,228,986,407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이문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214,000	1,000,000	1,214,000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민간인국외여비)	1,769,600	△103,000	1,666,600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1,100,070	200,000	1,300,070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경의중앙선 지상공간(응봉역~청량리역) 환경개선 기본구상 및 조사용역	-	150,000	150,000
도시공간개선단	일반회계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홍보 및 전시비)	1,769,600	△35,000	1,734,600
도시재생본부	일반회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회계이관)	400,000	△400,000	-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문래동1-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00,000	△100,000	-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정순황후 기념관 조성공사	-	250,000	250,00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도정)	1,335,916	50,000	1,385,916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8,762,000	△920,000	7,842,00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627,400	50,000	677,40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재촉)	1,158,441	△50,000	1,108,441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6,430,230	700,000	7,130,23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	4,808,000	△1,780,000	3,028,00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봉구 방학동 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6,430,230	1,100,000	7,530,23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6,430,230	500,000	6,930,230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영등포구 대림2동 한민족공동체가 꽃피는 마을	6,430,230	200,000	6,630,230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	2,600,000	2,60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문래역 인근 대규모 공유지 등 저개발 부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	150,000	150,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33,403,000	△11,481,000	21,922,000
도시재생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20,837,630	△4,300,000	16,537,63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청량리역 일대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	300,000	300,0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편	-	100,000	100,0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용산공원 디자인랩 설치 조성비	220,000	200,000	42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성수동 지하철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 경관개선(협정) 사업	1,124,000	450,000	1,574,0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강북구100백만원 또는 15개구750백만원)	1,022,700	750,000	1,772,7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	400,000	400,0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125,000	△63,000	62,000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선유로 경관조명개선 사업	-	50,000	5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천호대로 남단 지구단위 용역비	1,500,000	120,000	1,620,000
도시계획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500,000	1,700,000	3,200,000
주택건축국	일반회계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	150,000	150,000
주택건축국	일반회계	서울 세계건축대회 성과 확산 추진	30,000	120,000	150,000
주택건축국	일반회계	시민아파트 정리	5,908,157	△1,000,000	4,908,157
주택건축국	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및 진입로 개선(천호3동 주민센터,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복합개발)	-	2,900,000	2,900,000
지역발전본부	일반회계	플랫폼 창동61 EVERY DAY 오디션 프로그램 추진	-	95,000	95,000
지역발전본부	일반회계	아레나건립기반 국제적음악도시 창동 조성 포럼 개최 및 컨설팅	-	100,000	100,000
지역발전본부	일반회계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일반회계)	-	13,399,000	13,399,000
지역발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	446,000	446,000
지역발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6,674,000	△446,000	6,228,000
지역발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도시개발)	13,399,000	△13,399,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교통위원회			3,319,492,811	74,310,500	3,393,803,311
도시교통본부	일반회계	일반전출금(버스재정지원 등)	242,063,800	15,542,500	257,606,3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7호선 먹골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10,959,000	2,000,000	12,9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3호선 옥수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900,000	11,8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대역 1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 용역비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녹사평역 테마역사 추진	950,000	900,000	1,85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구파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1,400,000	12,3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응암역 4번 출구, 증산역3번 출구)	-	200,000	2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군자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군자역 6번, 7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	200,000	2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1호선 청량리~상봉 연결 타당성 용 역비	-	100,000	1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이동편의시설 설치	10,959,000	1,000,000	11,9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수락산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10,959,000	2,200,000	13,1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당고개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상계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방화역(5호선) 3번, 4번 출입구 캐노피	-	200,000	2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계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창동역 동서구간 공간구조 개선	10,959,000	1,000,000	11,9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08,500,000	△25,500,000	83,0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2,750,000	43,400,000	66,15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시민참 여)	1,000,000	△1,000,000	-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답역 출입구 신설 설계비	-	100,000	1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마장역 환기구 개선(6개소)	-	200,000	2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봉산역 방음벽 철거용역	-	40,000	4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당역 8번출구 E/S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노원역 5번출구 E/V 설치	10,959,000	2,500,000	13,4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역 5번출구 E/S 설치	10,959,000	1,400,000	12,3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이대역 5번, 6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	200,000	2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10,959,000	1,000,000	11,9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금호역(3호선) 4번출구 E/S 설치 설계비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사업	-	1,700,000	1,70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동대문 역사공원역 4번출구 E/V 설계비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발산역(5호선) 1번 출입구 E/S 설치 설계비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서울교통공사 차열페인트 시범시공(5개소-당산, 대림, 구의, 한양대, 성수)	-	360,000	360,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구산역 3번 출구 E/S 설치	10,959,000	2,000,000	12,959,00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청량리역 3번 출구 E/V 설치	10,959,000	100,000	11,059,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녹색교통진흥지역 조성 및 운영	850,000	△850,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예비비	2,267,728	50,000	2,317,728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시내버스 재난대응기구 다기능 소화기 시스템 설치 사업	-	300,000	3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버스승차대)	1,032,700	280,000	1,312,7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하철9호선 구간 버스 승차대	1,032,700	140,000	1,172,7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50,000	△50,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마을버스 재정지원	12,300,000	5,000,000	17,3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900,000	463,000	1,363,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	11,300,000	11,3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장동 운동장부지 환승주차장	-	1,000,000	1,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동대문구 노인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5,937,000	983,000	6,92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액	수 정 예산안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	473,000	473,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 교통관리)전출금	156,687,072	△2,456,000	154,231,072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창동초 주변 통학로 정비	965,000	300,000	1,26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효창공원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	4,750,000	700,000	5,45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 보행특화거리(아마존)조성	965,000	120,000	1,08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국제문화예술거리 보행환경 개선	-	500,000	5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2,177,200	100,000	2,277,2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용곡초 주변 주민보행로 개설 사업	965,000	150,000	1,11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대학로(대명길)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4,750,000	1,500,000	6,25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중대로8길 생활권도로 다이어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50,000	5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965,000	250,000	1,21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유도로 조성사업	76,000	△76,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안전교육관 자전거 인증사업관련 강사료	144,400	25,000	169,4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심 핵심축 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5,346,000	△2,880,000	2,466,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양재역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	3,000,000	500,000	3,5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가좌로 간선도로축 개선사업	-	320,000	32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강서권역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 도색	9,966,410	270,000	10,236,41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유지결사업	-	100,000	1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쑥고개길 중앙분리 뒀스	4,088,000	113,000	4,20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차선분리대(무단횡단금지펜스)	4,088,000	200,000	4,288,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개선사업	-	2,000,000	2,00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소음피해 조사 용역	-	50,000	50,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가변차로 도로교통안전회관사거리 신당사거리 교통체계개선	3,111,250	200,000	3,311,25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BIT)	2,310,000	5,000	2,315,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하철9호선 구간 BIT 설치	2,310,000	50,000	2,36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조정내역(위원회별)

(단위:천원)

실국	회계	사업명	당 초 예산안	심사결과 조 정 액	수 정 예산안
도시교통본부	교통사업특별회계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8,621,931	△7,862,000	759,93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호선 보훈병원역 지하보도설치 타당성 용역	-	50,000	5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쉴드 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용역	-	200,000	200,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국비확정내시]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3,871,000	7,400,000	61,271,000

명시이월 조서(추가)

□ 총 15건 : 40,953,663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 사유
계				59,304,834	40,953,663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SOFT 서울기반 구축 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3,600,000	1,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관문에 '경계'가 가지는 의미를 표현하고, '환영'의 의미를 전하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함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4,270,000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재배정사업으로 설계용역이 2018.1.22.완수 - (2회 유찰 및 설계기간 10개월 등)될 예정에 있어 공사비 명시이월
3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채정구 간)	120,000	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구간의 PIMAC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심공원 확충	달터근린공원(강남)조성	3,000,000	1,95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건물 254세대중 101세대(89.1.25이전 무허가)가 보상 및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남아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와 보상협의 지연(임대주택 요구 등)으로 연내 이전 및 철거가 어려우며 89.1.25.이후 건물소유자의 보상이 2018년에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보상 후 철거 및 공원조성필요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 과)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생활권공원 녹지조성사업	8,574,000	6,790,4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등 협의 진행 중으로 - 협의 보상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연번	실국(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 사유
6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도심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	2,043,480	816,652	- 자전거도로 구축예정 노선인 서강로(L=1.4km)의 사업시행 전 사업대상지(마포구)에서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 등을 사업에 반영한 후 사업 시행토록 요청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설명회 소요기간 및 공사발주, 입찰공고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공사계약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후 내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7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광역도로 건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9,800,000	9,300,000	- 국비 9,300백만원을 교부가 지연되고 기본및실시설계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일반회계)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000	20,000	- 부지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으로 '18년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9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 역 정비	1,950,200	1,680,000	-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7. 9. 21일 추가 증액(1,680백만원) 통보가 있으나 금년에 시비매칭분이 미확보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대상지선정, 설계, 유관기관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금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후 내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코자 함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간선도로확충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00,000	2,000,000	- 증액요구사업에서 17년예산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예정(분당선 연장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16.6.27) 됨에 따라 현재 교통수요 재분석 시행 중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월 필요)

연번	실국(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월 사유
11	도시기반시설 본부(기획예산 과)	도시철도건설사업	9호선 보훈병원역(가 칭)5번출구 타당성 용역	35,000	35,000	- 9호선 3단계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본공사 지연으로 집행시기 미래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 차로 설치	16,898,000	14,474,831	- 종로, 남대문로 BRT(중앙버스전용차로)가 '18년 상반기 개통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00천원 중 모니터링 용역비 및 개통 행사 비용(모범운전자 운영비) 등에 필요한 98,197천원 추가 명시이월 요청 - 2017년 명시이월 기 제출한 사업으로 금액 수정 제출 (사무관리비 98,197추가 증액)
1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미집행 공원조성	봉제산근린공 원(강서) 조성	4,065,280	703,263	- 토지보상 계획시 주변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오톱 반영 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적게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어 -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봉제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잔여예산 보상비 이월 필요
1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미집행 공원조성	평고개근린공 원(강서) 조성	1,100,000	681,034	- 토지보상 계획시 주변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오톱 반영 등으로 당초 예상한 보상비보다 적게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어 -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평고개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잔여예산 보상비 이월 필요
1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미집행 공원조성	천왕도시 자연공원(항공 지구)조성	1,828,874	764,444	- 천왕도시자연공원(항공지구) 조성사업 보상면적(토지 및 건물)이 약 50%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내년도 항공지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잔여 보상비를 활용하여 항공지구 내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고 캠핑장 조성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코자 부득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함